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위촉연구원 : 최선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이 연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과 동북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동북아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청소년 연구진들 간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현실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190개 국가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부처 명칭에 청소년(youth)을 포함한 경우가 98개 국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20개 국가에서 새롭게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청소년정책이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북아지역 3개 국가들은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20대 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자립지원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새롭게 법령을 제정하고 30대를 포괄하여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잇는 정책을 2010년 이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독립적인 청소년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공청단을 중심으로 20대 후반을 포함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에서는 최근 중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인적자본의 개발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지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3개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구진과 함께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공동연구원들과 자문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연구가 동북아지역의 청소년 정책을 이해하고 동북아지역 연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당 국가 연구자들과의 연구 협력 및 교류를 위해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을 통해 추진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위상과 현실을 진단해 보았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로 대다수(96%) 국가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youth)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98개 국가로 72.6%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79개 국가 중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에서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지역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20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아동(子ども), 청년(若子)으로 정책 대상 명칭을 바꾸고 30대 연령층까지 포괄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었다.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 정책이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청단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는 청소년들의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20대 후반을 포괄해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었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연령 규정에 대한 개정과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해 20대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 동북아 지역 연구진 간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과 행정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장기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동북아 국가, 동북아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정책, 성인기이행, 연령 규정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음.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과 동북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동북아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청소년 연구진들간의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음.
- 동북아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음.

2)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방향 설정과 해외 사례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음.

3)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개최

-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각국의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3회에 걸쳐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음.

3. 주요결과

1)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로 96% 수준임.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youth)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135개 국가 중 98개 국가로 72.6%에 이릅니다.

-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179개 국가/사회 중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사회에서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2) 동북아 지역별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비교

- 일본의 청소년 실태를 인구구조,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 집단따돌림과 교내폭력 발생 추이, 신체적 성장 및 노동인구 추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일본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일본 내각부는 '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아동, 청년(若子)으로 바꾸고 정책 대상을 30대 연령층까지 포괄하였음.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둘째, 취약한 아동과 청년을 비롯해 이들 가정을 지원, 셋째,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환경 정비임.
- 중국의 청소년 실태를 인구구조, 교육수준, 행복감 수준, 실업률, 범죄율, 웰빙지수 등을 통해 분석하였음.
-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 대신 중국 청소년정책의 6가지 영역을 제시하면, 첫째, 이념적인 맥락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향상”에 관한 것, 둘째, 중국 청소년정책의 추진주체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청단(共靑團)의 역할에 관한 것, 셋째,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조직들의 중요성에 관한 것, 넷째, 청소년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것, 다섯째, 시장지향 경제개혁에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비하는 것, 여섯째, 교육, 육체적·정신적 건강, 공동체 참여와 같은 청소년들의 발달문제에 대비하는 것임.
-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를 인구, 교육수준, 실업률 및 고용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핵심 영역 12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비공식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차세대 역량 강화 2) 차세대 중심의 창업 활동 활성화 3)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4)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5)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통한 청소년 보호 6) 마약이나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 7)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사회에

일원으로 참여 지원 8)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젊은 가정 지원 9) 차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연계협력 강화 10) 다문화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 지원 11) 청소년정책 예산 확보 및 청소년 국가기금 안정적 운영 12)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미디어 공간 확대임.

-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과 관련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20대 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었음.
-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대동소이하지만,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차이가 있음.

4. 정책제언

- 향후 동북아 청소년 연구를 위해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청소년 연령 규정 개정과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를 통해 20대를 포괄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동북아 지역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과제 공유가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6
II.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	9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의 현황 및 특성	11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17
III. 동북아 지역별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비교	19
1. 일본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21
2. 중국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33
3.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43
4. 한국과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49
IV. 결론 및 정책제언	57
1. 요약 및 결론	59
2. 정책제언	60
참고문헌	63
부 록	69
1. 전 세계 청소년정책 대상연령 및 부처명	71
2. 일본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0) 요약	80
Abstract	99

표 목차

〈표 I-1〉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개최	7
〈표 II-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	12
〈표 II-2〉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청/위원회 현황	14
〈표 II-3〉 주요 국가별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포함 여부	15
〈표 II-4〉 국가 단위 청소년관련 기관/조직 현황	16
〈표 II-5〉 주요 국가 청소년 정책 대상 연령	18
〈표 III-1〉 일본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30
〈표 III-2〉 국내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50
〈표 III-3〉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 대상 연령 규정 비교	51
〈표 IV-1〉 청소년기본법 연령 규정 개정(안)	60
〈표 IV-2〉 독일의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 규정 현황	61

그림 목차

【그림 II-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2014년)	13
【그림 II-2】 청소년정책 주관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용어 사용 여부(2014년)	14
【그림 II-3】 청소년정책 대상 청소년(youth) 연령 규정 현황(2014년)	17
【그림 III-1】 일본의 30세미만 인구추이	22
【그림 III-2】 일본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	23
【그림 III-3】 일본 집단따돌림(イジメ) 발생 연도별 추이	24
【그림 III-4】 일본 교내폭력 발생 연도별 · 학교급별 추이	24
【그림 III-5】 일본 학생 부등교 연도별 추이	25
【그림 III-6】 일본 청년층 노동인구와 노동비율	26
【그림 III-7】 일본 청년층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26
【그림 III-8】 비정규고용 추이	27
【그림 III-9】 일본의 청년 무직자 수의 연도별·연령대별 추이	28
【그림 III-10】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일본 결과	29
【그림 III-11】 일본 청소년 기본계획 「아동·청년비전」의 정책과제	31
【그림 III-12】 중국의 연령별 2015년 및 2050년 인구분포 전망 결과	34
【그림 III-13】 중국 종합사회조사 조사 지역 분포	35
【그림 III-14】 연령별 중국의 교육수준 분포(CGSS 결과)	36
【그림 III-15】 중국 청소년(15~24세)의 행복감 점수(CGSS 결과)	36
【그림 III-16】 중국 청소년(15~24세)의 사회적 공정성 점수(CGSS 결과)	37
【그림 III-17】 중국 청소년(15~24세)의 소득 수준 도시-농촌 비교 (CGSS 결과)	38
【그림 III-18】 중국 15-24세 실업률 연도별 추이	38
【그림 III-19】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중국 결과	39
【그림 III-20】 러시아의 연령별 2015년 및 2050년 인구분포 전망 결과	43
【그림 III-21】 러시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한·일과의 비교	44

【그림 Ⅲ-22】 러시아의 초등학교 비진학 아동의 연도별 추이	45
【그림 Ⅲ-23】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45
【그림 Ⅲ-24】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고용률의 연도별 추이	46
【그림 Ⅲ-25】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니트 비율	46
【그림 Ⅲ-26】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러시아 결과	47
【그림 Ⅲ-27】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개념도	52
【그림 Ⅲ-28】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54

제 I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25년의 시간 동안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국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1987년 최초의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으로 볼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제1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1993~1997)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 이르렀다. 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윤철경 외, 2008).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지난 25년 동안 전담부서의 변경과 변화된 정책 환경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청소년 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주목하였다. 국제비교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좁은 의미의 동북아 국가들로 분류되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러시아를 포함하였다. 일본에 비해 중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며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역시 국내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국내에 제대로 소개된 바 없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일본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내각부(内閣府) 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한다.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아동·청년육성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유사하게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한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중국은 청소년정책으로 특징할 수 있는 제도와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청소년을 다루는 다양한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정책들도 추진 중에 있다(김정숙·김기현, 2015). 유럽과 동북아시아를 잇는 러시아는 2013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 А Н Х и Г С)’에서 러시아연방정부의 차세대정책 발전문제를 다루고 있는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발표하는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Р А Н Х и Г С, 2013).

이처럼 동북아 국가들은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 분야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자료, 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공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청소년정책분야에서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동북아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 교류는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지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 있다. 동시에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동북아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관련 연구자들 간의 연구 협력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연구자들과의 공동포럼을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공동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기 이전에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동북아 지역 청소년정책을 진단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 국가는 전 세계 198개 국가/사회이다.

2) 동북아 청소년정책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첫 번째로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4개국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각 국가별로 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으로 청소년 인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고용, 청소년 보호라는 측면에서 비교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국가의 생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정책 대상인 청소년 연령 규정과 관련 법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정책의 지원 대상 범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책 현황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비롯하여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러시아의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등이 해당된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을 토대로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하면서 관련 연구자들 간의 교류 협력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 전문가들과 10월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 동북아 청소년들의 실태 분석

이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4개 국가의 청소년들의 인구규모, 교육 현황, 진로현황, 생활현황 등 생활 실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최근 동북아지역 청소년정책의 관심이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기 이행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통계자료의 접근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분석결과는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되 본 보고서에는 분석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세미나 자료집으로만 발간할 예정이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문헌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과제들을 동북아 국가들 간에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 정책이나 진로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청소년 실태와 관련하여 YouthPolicy.org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자료를 통해 청소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2차 자료 분석

동북아지역 청소년 실태는 문헌 분석과 더불어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하고자 한다. 원자료 접근이 용이한 일본을 대상으로 한국과 비교 분석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3)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과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청소년 정책 및 동북아 지역 전문가, 부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4)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개최

동북아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은 동북아지역 청소년 관련 전문가간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표 I -1> 참조)

표 I-1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개최

주제	발표자	일시 및 장소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취업, 진학, 무직	한국-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이누이 아키오(수도대학동경), 코스키 레이코(노동정책 연구·연구기구)	2015년 9월 17일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 정책 비교 및 상호협력	한국-김정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중국-자오 징(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자오 윈(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2015년 10월 2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청소년 (차세대) 정책 비교 및 상호협력	한국-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형숙(한·러대화 사무국) 러시아-아시코프 일리아 올레고비치(극동연방대학교), 쿠릴레프, 콘스탄틴 페트로비치(국민민족우호대학교)	2015년 11월 17일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

참석한 연구진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누이 아키오(乾彰夫) 수도대학동경(首都大學東京) 명예교수는 일본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조사)을 하는 일본 청소년코호트 조사의 연구책임자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일본의 노동정책연구·연구기구(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JILPT)의 코스키 레이코(小杉 礼子) 연구원은 일본에서 프리터와 니트라는 신조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후생노동성에서 이에 대한 공식통계를 집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일본 연구자들과 함께 개최한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은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취업, 진학, 니트”라는 주제로 2015년 9월 17일에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는 크게 두 주제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청년 비정규직의 고용과 현황에 대해서 이누이 아키오 교수가 일본 사례를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시균 박사가 한국 사례를 발표하였다. 1주제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일본사례를, 한국노동연구원의 성재민 박사가 한국 사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는 니트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코스키 레이코 교수가 일본 사례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현 박사가 한국 사례를 발표하였다. 2주제에 대해서는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의 강영배 교수가 일본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국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이상준 박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 매년 중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정책 비교 및 상호협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중국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上

海青年管理干部學院, Shanghai Youth College)의 왕 징보(王靜波) 부원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자오 징(趙靜) 경영학부 교수가 중국 청소년의 경제 활동 참여 관련 연구를, 자오 웬(趙文) 청소년센터 담당교수가 중국 청소년관련 연구 동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 소속 김정숙 박사는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연구 동향을 학술지 논문주제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하였고, 황세영 박사는 동북아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야시코프, 일리야 올레고비치(Яськов, Илья Олегович) 극동연방대학교 차세대정책과 과장이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적 자본의 발전》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쿠릴레프, 콘스탄틴 페트로비치(Курьлев, 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국립민족우호대학교 국제관계이론 및 역사학부 교수는 러시아 청소년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정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코즐롭스키, 블라디미르 바체슬라보비치(Козловски, Владимир Вячеславович)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사회학과 교수가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청소년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벨로우스, 발레리아 비탈리에브나(Белюс, Валерия Витальевна) 국립민족우호대학교 국제협력과장과 카기예프, 아슬란 마고메도비치(Кагиев, Аслан Магометович) 우랄연방대학교 총장 차세대정책 고문은 “한국과 러시아의 청소년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원의 김기현 박사가 “한국의 청소년 정책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이형숙 한러대화 사무국 기획팀장이 한국과 러시아의 대학생 교류 사례인 “한·러 대학생 대화사례”를 발표하였다. 전성민 한국청소년사업총연합회 회장이자 한러대화 차세대분과 간사위원이 “한국의 시각에서 본 러시아 차세대정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 II 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 현황 및 특성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제 II 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특성*

1.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및 정부조직의 현황 및 특성

동북아지역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개괄적으로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기구인 Youthpolicy.org는 각 국가의 청소년정책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고 있다(Youthpolicy.org, 2014). Youthpolicy.org는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있는지,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정책 추진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조직이 있는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국가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1>은 세계의 주요 대륙별로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5개 대륙 중에서 2014년 현재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비율이 높은 곳은 오세아니아 지역이다. 15개 국가 중 14개 국가(93%)가 국가 단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 지역은 54개 국가 중 23개 국가로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 단위 청소년정책 추진 비율은 57%(28개/49개)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최근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1월 대비 2014년 4월 현재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99개에서 122개로 무려 22개 국가나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유럽지역은 27개에서 35개로 8개 국가나 증가하였다.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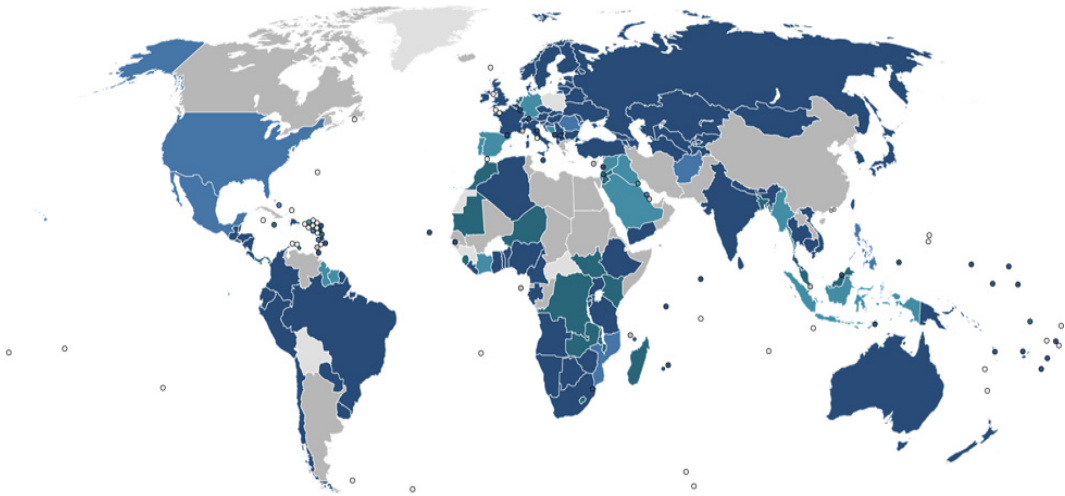
표 II-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

	국가/사회	국가단위 청소년 정책운영	(%)	국가 청소년정책 개발/수정 중	(%)	국가 청소년정책 없음	(%)
2014년	아메리카	22	61%	6	17%	5	14%
	유럽	35	80%	5	11%	3	7%
	아시아	28	57%	11	22%	9	18%
	오세아니아	14	93%	1	7%	0	0%
	아프리카	23	43%	14	26%	14	26%
	전체	122	62%	37	19%	31	16%
2013년	아메리카	17	47%	14	39%	5	14%
	유럽	27	61%	8	18%	9	20%
	아시아	23	47%	14	29%	12	24%
	오세아니아	11	73%	4	27%	0	0%
	아프리카	21	39%	16	30%	17	31%
	전체	99	50%	56	28%	43	22%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16

[그림 II-1]은 Youthpolicy.org에서 청소년정책 추진 현황을 그래픽으로 제시한 것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청소년정책을 국가단위로 추진하고 있다(Youthpolicy.org, 2014:14-15). 이 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국가 단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멜라네시아(Melanesia) 지역 역시 4개 국가 중 4곳 모두 청소년정책을 국가 단위로 추진 중이며 마크로네시아(Micronesia)의 5개 섬 지역 역시 5곳 모두 청소년정책이 국가 단위로 추진 중이다. 폴리네시아(Polynesia)만이 5개 섬 지역 중 3개 섬 지역만이 청소년정책을 국가 단위로 추진하고 있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남동아시아, 서남아시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지역은 5개 국가 모두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100%).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은 서남아시아로 18개 국가들 중 단지 7개(39%) 국가만이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6개 국가 중 4개 국가가 국가 단위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67%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 주: 짙은 청색 및 청색은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 중인 경우이며 녹색은 국가단위의 청소년정책을 개발 중이거나 개편 중인 경우이다. 흐린 회색은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이 없거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을 의미함.

*출처: Youthpolicy.org(2014). p. 14-15

【그림 II-1】 세계 청소년 정책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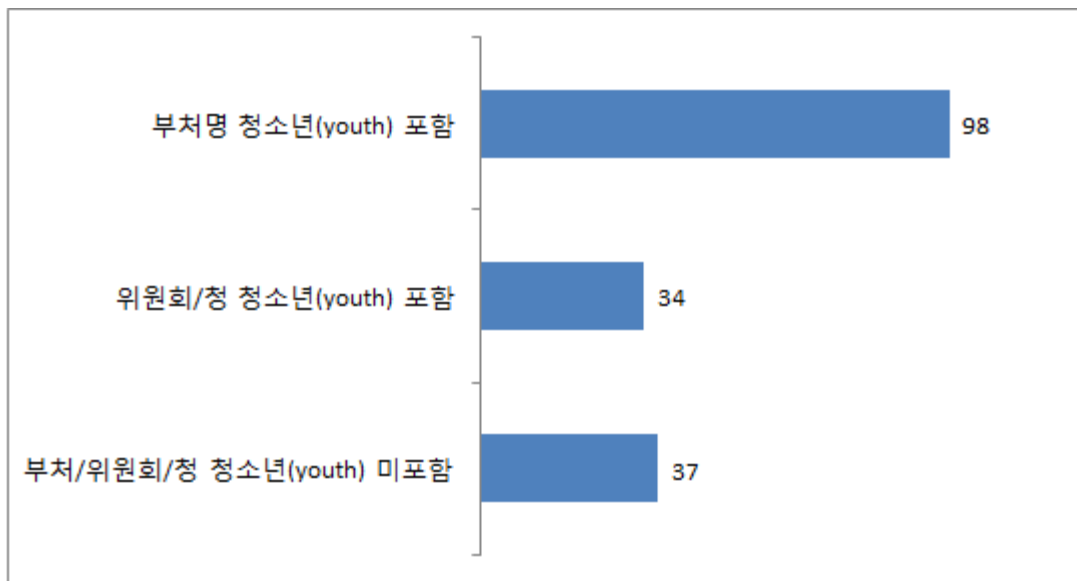
Youthpolicy.org는 청소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나 부서, 청이 존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중앙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였거나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 하위 부서나 청, 위원회 단위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 II-2]는 청소년담당 국가부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로 96% 이다. 청소년정책 자체가 국가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국가 중에서 72.6%(98/135)가 청소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정책을 처음 추진할 당시에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 명칭을 사용하였다. 2005년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후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청소년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 청소년정책이 이관된 후 청소년 명칭(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이 사라지고 가족정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표 II-2 청소년정책 주관 국가부처/청/위원회 현황

대륙	소속국가	담당부처/청/위원회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52	1	1
		96.3%	1.9%	1.9%
아메리카	36	33	1	2
		91.7%	2.8%	5.6%
아시아	49	47	0	2
		95.9%	0.0%	4.1%
유럽	44	43	0	1
		97.7%	0.0%	2.3%
오세아니아	15	15	0	0
		100.0%	0.0%	0.0%
전 세계	198	190	2	6
		96.0%	1.0%	3.0%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5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가별 부처/청/위원회 명칭은 <부록 1> 참조.

【그림 II-2】 청소년정책 주관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용어 사용 여부(2014년)

중앙부처가 아닌 청이나 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는 국가는 해당 정부조직 명칭에 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34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처나 위원회, 청과 같은 정부조직 명칭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3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II-3 주요 국가별 부처/청/위원회 명칭 청소년(youth) 포함 여부

국가	부처명	국가	부처명
한국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프랑스	체육, 청소년, 교육 및 공동체 생활부 (Ministry for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독일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
중국	공청단 (All-China Youth Federation)	스웨덴	국가청소년조직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zations)
러시아	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핀란드	교육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 Culture)
미국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탈리아	청소년정책과 체육부 (Ministry of Youth Policies & Sports)
영국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스페인	보건, 사회서비스 및 평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 & Equity)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가별 부처명칭은 <부록 1> 참조.

<표 II-3>은 주요 국가별로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지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은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대상 중심 정책을 모아서 중앙부처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가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다른 점은 노인정책을 포함하는 점과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점이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체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는 중앙부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의) 한국과 같이 체육과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중앙부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함께 수행하

는 국가는 영국, 핀란드, 러시아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청소년정책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다양한 중앙부처에서 수행 중인 청소년정책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정부조직으로 청소년정책관계부처협의회 방식으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일본도 내용상으로는 미국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 유사한 내각부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반면, 중국은 중앙부처가 아닌 중국 공산당의 하위조직인 공청단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수행 중이다.

표 II-4 국가 단위 청소년관련 기관/조직 현황

		기관/조직 존재	부재	불명확
아프리카	54	34	8	12
		63.0%	14.8%	22.2%
아메리카	36	17	9	10
		47.2%	25.0%	27.8%
아시아	49	24	17	8
		49.0%	34.7%	16.3%
유럽	44	42	1	1
		95.5%	2.3%	2.3%
오세아니아	15	14	0	1
		93.3%	0.0%	6.7%
전세계	198	131	35	32
		66.2%	17.7%	16.2%

* 출처: Youthpolicy.org(2014), p.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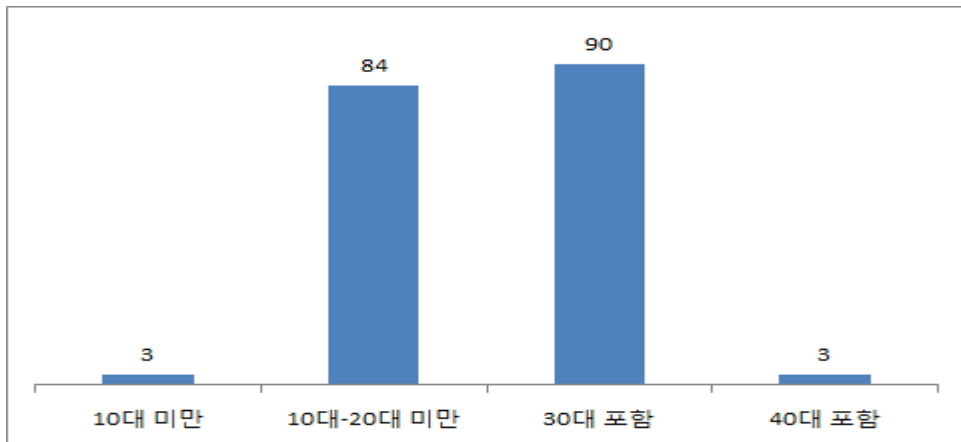
Youthpolicy.org는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처럼 청소년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유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관이나 조직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외에도 정부위원회, 협의체, 정당 등도 포함한다. Youthpolicy.org에서 이에 대한 존재 여부는 정부나 언론매체, 지역이나 국제기관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는 대륙별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90% 이상이 국가 단위의 기관이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표 II-4> 참조)

2.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

이 절에서는 청소년정책의 대상 연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youth 개념과 유사하게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별로 상이하게 대상 연령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림 II-3]은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연령대별로 제시하였다. 46.9%는 우리나라처럼 10대와 20대를 포괄하여 청소년 정책대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청소년 통계를 낼 때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상 연령을 규정한 17개 국가 중 국가나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179개 국가/사회인데 이 중에서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사회가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스(youth)라는 용어를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에 가까운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이 기준을 넘어서 30세까지 청소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10대만을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얀마 등 3개 국가들이며 40대까지 청소년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네팔 등 3개 국가들이다.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국가별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은 <부록 1> 참조.

【그림 II-3】 청소년정책 대상 청소년(youth) 연령 규정 현황(2014년)

표 II -5 주요 국가 청소년 정책 대상 연령

국가	대상연령	국가	대상연령
한국	9세 - 24세 (청소년기본법, 법률 규정)	프랑스	3세 - 30세
일본	0세 - 30세	독일	12세 - 27세 미만 (child& youth act, 법률 규정)
중국	14세 - 28세	스웨덴	13세 - 25세 (youth law, 법률 규정)
러시아	15세 - 29세	핀란드	0세 - 29세 (youthAct, 법률 규정)
미국	0세 - 24세	이탈리아	15세 - 35세
영국	16세 - 19세	스페인	15세 - 29세

* 출처: Youthpolicy.org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국가/사회별 현황표(fact-sheet)에 제시된 내용 중 주요 국가를 정리한 것임.

<표 II-5>에서는 주요 국가의 청소년정책 대상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핀란드, 미국 등은 출생기부터 대상 연령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법적 정의는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제시하는 국가들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20대 중반 이상에서 30대를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연령을 규정하여 청소년 전반을 다루는 법령이 있는 나라는 독일, 스웨덴, 핀란드와 피지 4개 국가이다. 대체로 청소년 보호처럼 청소년과 성인을 규제하는 법령에서는 연령 규정이 있다. 정책 전반 혹은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와 같이 대상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청소년 기본 법령에서는 연령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관계 법령을 갖추고 있지만 법령에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아동·청년 비전이라는 청소년정책 계획에 대상별 정의와 연령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은 영유아기와 학령기, 그리고 사춘기인 자로 0세에서 20대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하고 있다. 청년은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20대를 포함하며 정책에 따라서 40세 미만까지의 후기청년기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25).

제 III 장

동북아 지역별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비교

1. 일본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2. 중국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3.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4. 한국과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Ⅲ장

동북아 지역별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비교*

1. 일본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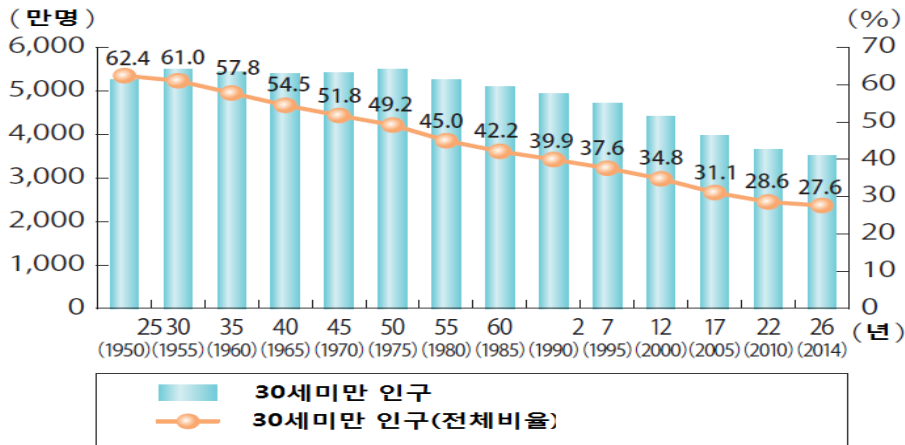
1) 일본의 청소년 실태

일본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아동과 청년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아동·청년은 0-30세까지를 의미하며 정책 사업에 따라서 40세 미만까지를 포괄하고 있다.⁴⁾ 청소년 연령 규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다루는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일본의 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인구 구조를 보면, [그림 Ⅲ-1]에서와 같이 1975년 이후 30세 이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195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62.4%를 차지했으나 2014년 현재에는 27.6%에 불과하다. 전체 세대수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30년 전의 약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소자화(少子化)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자화의 원인으로 늦게 결혼하는 문제(晩婚化)와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미혼율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에 따른 지원을 늘리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 이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4)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japan>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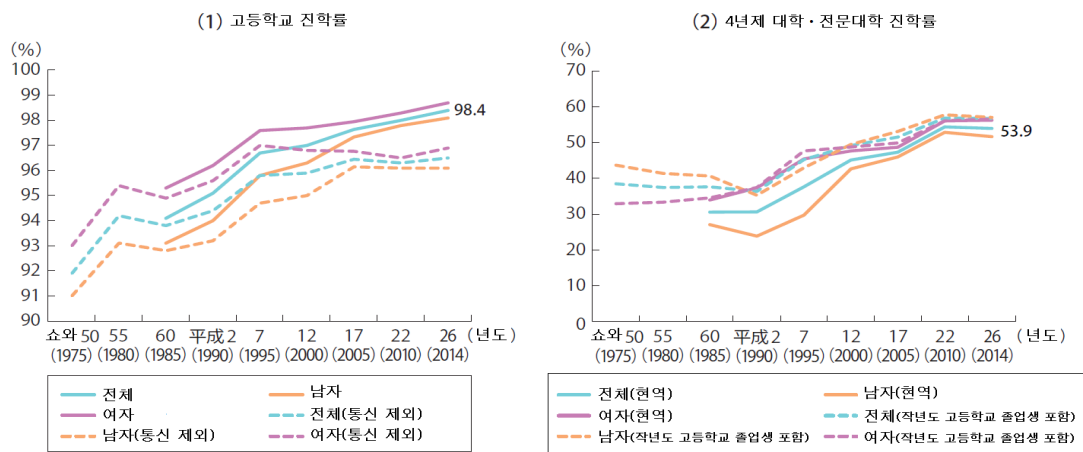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2

【그림 Ⅲ-1】 일본의 30세미만 인구추이

이러한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청년 감소 경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연합(UN)은 2050년까지 각 국가별 인구전망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일본의 14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12.9%이고 2050년에 인구 비중은 12.4%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UN, 2015). 15에서 59세의 인구는 소자화의 파고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같은 기간 이 인구의 비중은 54.1%에서 45.1%로 9%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자화는 일본에서 아동·청년 정책의 가장 큰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양적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역량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청년 중에는 1990년대 이후 정사원으로 취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프리터(freeter)족이 늘어나고 아예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학교도 다니지는 않는 니트(NEET)족까지 늘어나면서 청년 유희화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희망격차사회나 의욕저하사회 등 청년들이 더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한국, 미국과 더불어서 고등교육이 대중교육으로 진입하여 고학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사회로 평가받는다. 일본 청소년의 2014년도 중등학교 등록률은 평균 98.4%로 매우 높으며, 대학진학률은 53.9%로 나타나고 있다.([그림Ⅲ-2] 참조)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15

【그림 Ⅲ-2】 일본의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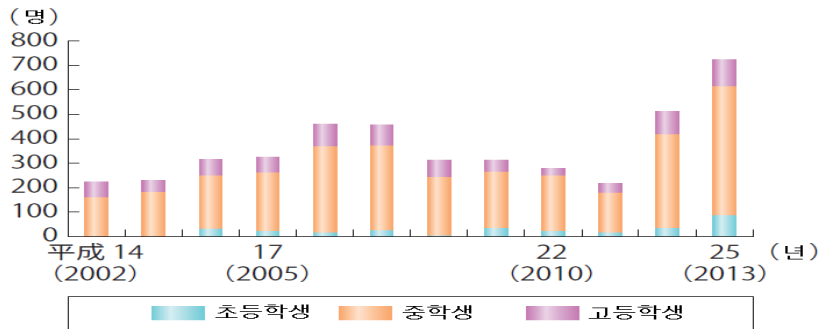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중등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이 발달한 곳이다. 전수학교라고 불리는 중등후 교육기관이 있고 중등후 교육기관을 포함한 진학률은 60% 이상이다. 고학력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는 한편, 청년들의 역량 수준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대학 진학을 증가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2010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청년들의 의욕저하라는 측면과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선진국이라는 측면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의 청년들이 독립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캥거루족 문제가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등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지표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았다. 2012년 실시된 OECD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에서 66국 가운데 읽기는 4위, 수학은 7위, 과학은 4위를 차지하여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여주었다(OECD, 2014).

중·고등학교에서는 직업체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체 중학교 가운데 공립의 98.6%, 국립의 62.3%, 사립의 25.8% 비율로 직업체험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립 79.8%, 사립 40.6%, 국립 10.5%로 인턴십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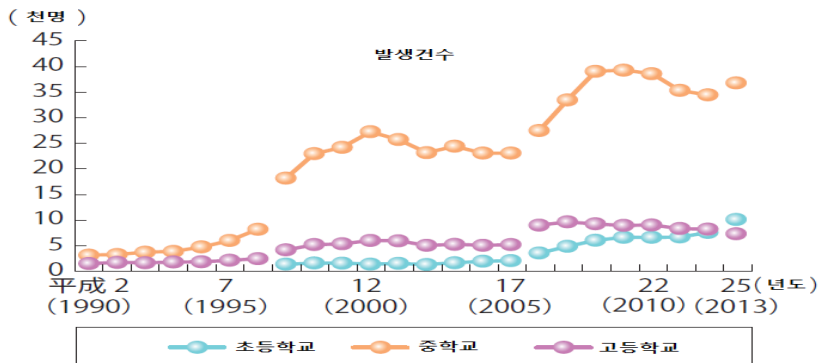
일본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는 집단따돌림(イジメ)과 은둔형 외톨이(引き籠り), 부등교(不登校)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인성교육을 가정이나 사회가 아닌 국가에서 법률로 제정해 추진 중이다. 일본에서 이 문제는

1977년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 발생한 폭력 교실 사건이나 1978년 시가현(滋賀縣) 중학교 동급생 이지메 보복 살인 사건 등 1970년대부터 일본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림 III-3]에서와 같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학생 비율은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정책이 일본에서 중요한 청소년정책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전반의 발생 건수 역시 중학생들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III-4] 참조)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22

【그림 III-3】 일본 집단따돌림(イジメ) 발생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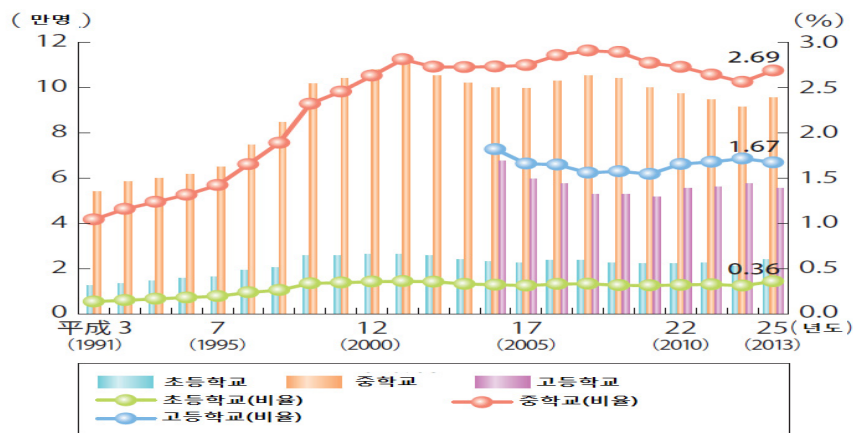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27

【그림 III-4】 일본 교내폭력 발생 연도별·학교급별 추이

1990년대 후반 들어 자살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3년 현재 20-29세 자살건수는 2800여 건, 19세 이하 청소년의 자살건수는 547건으로 나타났다.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우울증 등 심리적인 이유이며, 19세 이하에서는 학교관련 문제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이청훈, 2015: 11).

등교거부 청소년의 전체 숫자는 [그림 Ⅲ-5]와 같이 1990년대 이후 급증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부등교 문제가 가장 심각하여 2013년 현재 전체 중학생의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1.67%, 초등학생은 0.36%가 부등교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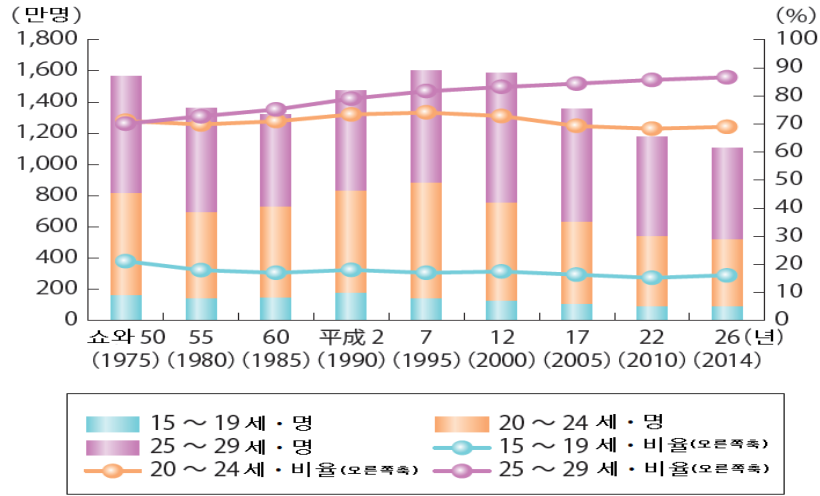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24

【그림 Ⅲ-5】 일본 학생 부등교 연도별 추이

아동 빈곤율은 전체 빈곤율의 증가와 함께 상승하는 추세로 2009년에는 16%에 이르렀다.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은 50%로 과거와 변함없이 높은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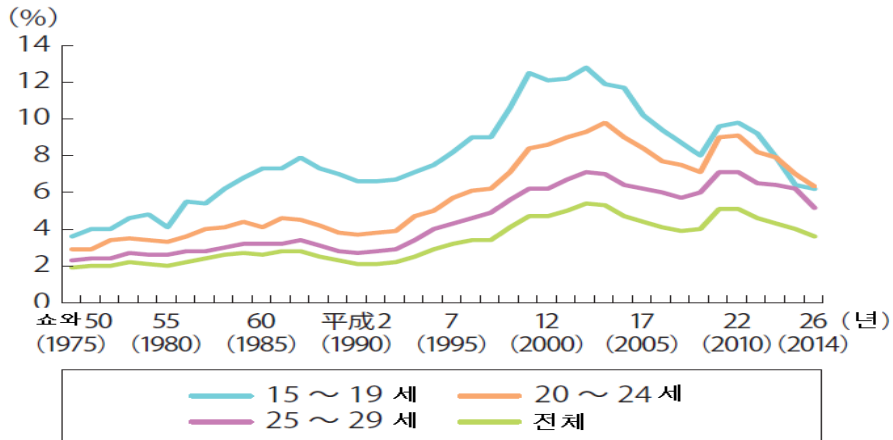
청소년 신체적 성장과 관련하여, 지난 30여 년 간 평균 신장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 체중은 약간 감소하였다. 초·중등학생들 중 10-20% 가량은 거의 운동을 하지 않으며, 20대의 50-60%는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15-29세의 젊은 노동인구는 [그림 Ⅲ-6]에서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감소하고 있다. 25-29세 연령대에서의 노동 비율은 점점 증가하여 90%에 근접하고 있고, 20-24세는 70%, 15-19세는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31

【그림 III-6】 일본 청년층 노동인구와 노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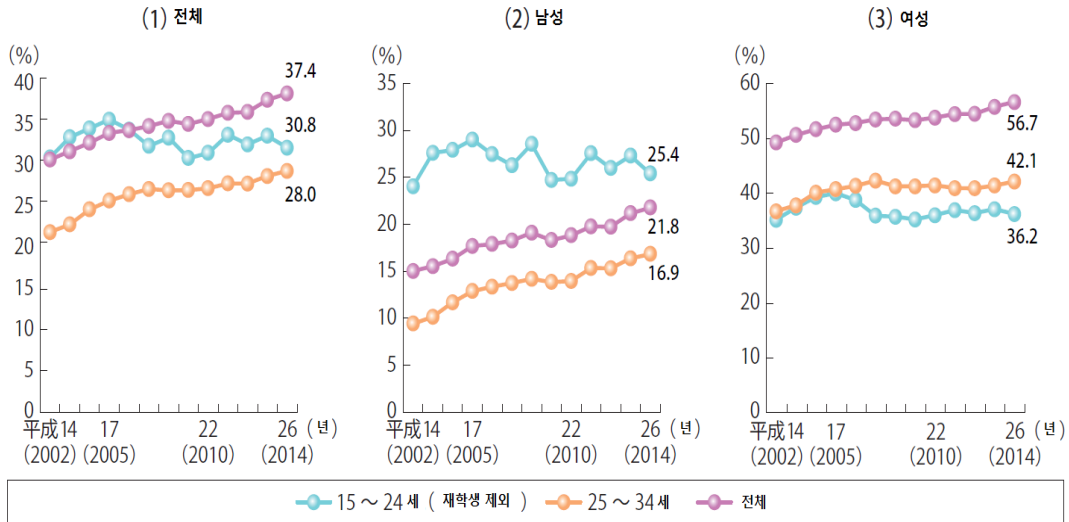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31

【그림 III-7】 일본 청년층 연령대별 실업률 추이

일본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는 [그림 III-7]과 같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점점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경향이 유지되다가 최근에 청년층의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실업률과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5-34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그림 Ⅲ-8]에서와 같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5-34세 연령대에서 비율이 크게 높아져 2014년 현재 28%에 이르렀다. 15-24세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30.8%로 더 높다. 두 연령대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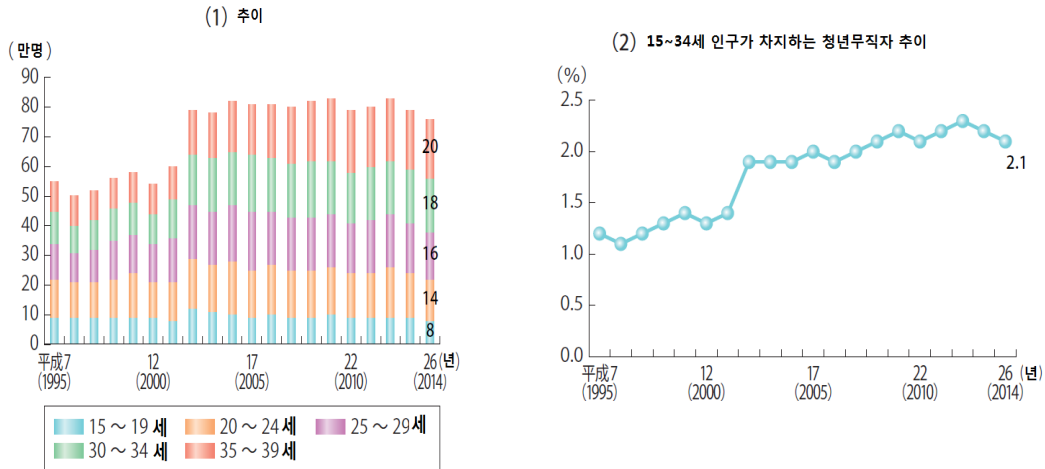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33

【그림 Ⅲ-8】 비정규고용 추이

15-39세 사이의 청년 니트족의 현황은 [그림 Ⅲ-9]와 같다. 니트족의 숫자는 2002년 크게 증가한 이후 큰 변동은 없으며, 2014년에는 56만 명으로 전년도에 보다 4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15-34세 연령대 니트족 비율은 2014년 현재 전체 인구의 2.1%에 이른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15-19세의 경우 ‘학교 이외에 다른 곳에서 진학 또는 자격취득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주된 이유였고, 20-29세의 경우에는 ‘질병 및 부상’등이 주된 이유를 차지하였다. 그 외 이유로는 ‘구직활동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와 ‘지식 및 능력에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15-34세 인구 가운데 프리터 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2014년 현재 179만 명에 이르고 있다. 15-24세에서는 프리터 족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25-34세에서는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출처: 내각부 (2015). 「아동·청년백서(子ども・若者白書)」, p.38

【그림 Ⅲ-9】 일본의 청년 무직자 수의 연도별·연령대별 추이

“평상시에는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는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숫자는 69.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했다’와 ‘질병’이 각각 23.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취업활동이 잘되지 않았다’는 20.3%, ‘등교거부’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함’이 11.9%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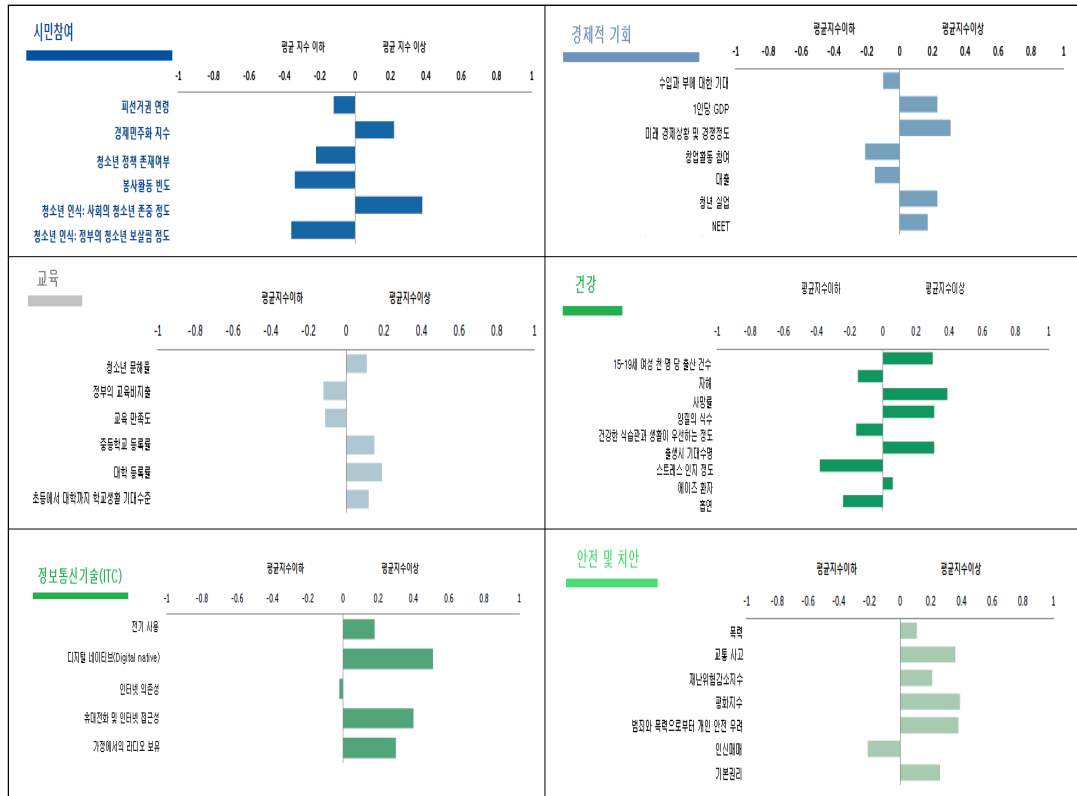
다음으로 국제비교연구를 살펴보면, 170개 국가 15-2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건강, 삶의 질, 고용, 시민권, 정치 참여 등의 영역을 측정하는 청소년발달지표(Youth Development Index) 조사에서 일본은 0.79점으로 비교대상 국가 중 9위로 매우 높은 순위에 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상승하였다⁵⁾.

2014년 세계청소년웰빙지수(Global Youth Wellbeing Index)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일본은 7위로 나타났다⁶⁾.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시민 참여영역은 23위로, 경제민주화 지수 및 사회의 청소년 존중정도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⁷⁾. 경제적 기회영역은 2위로 수입과 부에 대한 기대, 창업활동, 대출 등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육영역은 9위로, 정부지출, 교육만족도에서

5)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japan>

6)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위, 중국은 14위, 러시아는 25위로 나타났다.

7) <http://www.youthindex.org/> 에서 발췌



출처: <http://www.youthindex.org/>에서 발췌. (검색일: 2015년 11월 3일)

【그림 Ⅲ-10】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일본 결과

약간 낮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은 8위로, 자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 스트레스, 흡연에서 점수가 낮았고 나머지는 높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영역은 6위로 인터넷 의존성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안전 및 치안영역은 2위로 인신매매를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점수가 높았다.([그림 Ⅲ-10] 참조)

2) 일본의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동북아지역 중에서 일본은 법령에서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서 미성년자, 소년, 아동, 연소자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책영역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Ⅲ-1> 참조)

표 III-1 일본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	만 14세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齡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유아(乳児)	만1세 미만
유아(幼児)	만1세 이상 소학교 취학 시 기에 도달하지 않은 자	19세 미만
소년(少年)	소학교취학 시기에서 만18 세에 이르지 않은 자	9-24세 이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児童買春・児 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 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 (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 (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 (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青少年が安 心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 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 (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 (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 (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 (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청년 (若者)	규정 없음 (정책 대상 0-39세)

* 출처: 김기현(2012)

일본 「민법」은 미성년자를 20세 미만, 「소년법」은 소년을 20세 미만,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09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고 기존 '청소년(靑少年)'이라는 명칭 대신 아동(子ども), 청년(若子)으로 바꾸었으며 정책 대상을 30대 연령층까지 포괄하였다(이광호, 2012).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늘어난 것은 일본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 니트(NEET)의 연령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책 대상을 30대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자녀·젊은이 육성지원 추진대강 기본 방향			
모든 자녀·젊은이 건강한 성장 지원	(1) 자녀·젊은이 자아형성 지원 (2) 자녀·젊은이 사회형성 및 사회 참여 지원 (3) 자녀·젊은이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확보 (4) 젊은이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 지원	취약 자녀·젊은이와 가정 지원	(1) 곤란한 상황에 따른 대응 ① 니트, 프리터, 부등교 지원 ② 장애 자녀 및 젊은이 지원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④ 빈곤가정 자녀 및 젊은이 지원 ⑤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 ⑥ 외국인 등 다문화가정 지원 (2)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1) 환경 정비 ① 가정, 학교 또는 지역의 상호 관계의 재구축 ② 다양한 주체를 활용한 지원방안 마련 ③ 관계기관의 기능강화,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담당자 육성 ④ 자녀·젊은이들을 둘러싼 유해환경 등에 대한 대응 (2) 성인사회구조의 재검토		

출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_gaiyo.pdf에서 2015. 7. 8 인출.

【그림 III-11】 일본 청소년 기본계획 「아동·청년비전」의 정책과제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내각부(内閣府)에서 관장하며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靑少年育成施策大綱)을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제시해 왔다. 2010년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 해당하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平成21年法律第71号)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가 구성되었다. 7월 23일 추진본부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과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일본의 청소년계획은 10대 중심의 청소년이라는 용어 대신 20대를 포괄하

여 아동과 청년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점차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그림 II-11]에서 제시한 청소년 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모든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취약한 아동과 청년을 비롯해 이들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동과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달라진 부분은 지원 대상을 10대 청소년에서 0세부터 30세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유럽이나 국제기구들에서 강조해온 생애주기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영유아에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변모했다. 「아동·청년비전」은 특히 포스트 청년기(post youth)로 불리는 30대 이상 40대 이하 중년층 중에서 취업, 결혼, 출산 등 성인기 이행이나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아동·청년비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2] 참조). 이 계획은 기본적인 방침 중에서 5가지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아동과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동과 청년을 육성(育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성인과 동등하게 시민의 일원이자 사회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정책의 내용으로 아동과 청년의 자립과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정책 대상과 관련하여 중층(中層)적인 접근으로 일반 아동 및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성인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성인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사업 추진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3).

이 계획은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동과 청년들이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동과 청년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自己形成支援)과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 그리고 건강과 안정을 갖도록 하는 것,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정책 사업들로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 계층의 아동과 청년들이 비행과 범죄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빈곤, 장애,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과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교 거부 등 위기계층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들과 이들의 피해방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동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4).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대응하며 바람직한 성인 사회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청년비전』은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정책 대상에 있어서) 10대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20대를 포괄하여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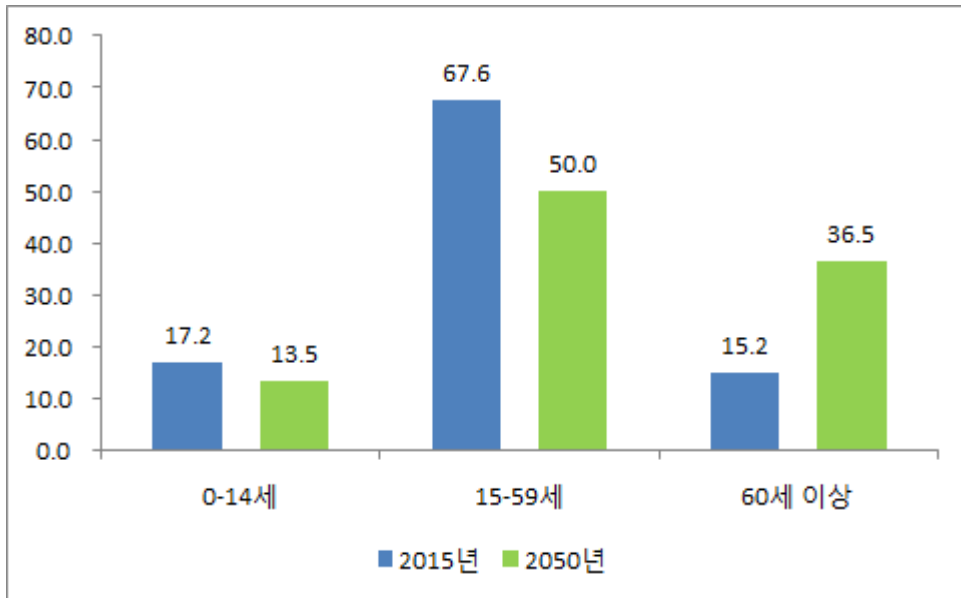
2. 중국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1) 중국의 청소년 실태

중국의 청소년정책 특성을 살펴보기 전에 이 절에서는 중국의 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국가 단위의 청소년정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대상 연령 규정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정당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중국에서 공청단의 가입 연령(14세-28세)과 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를 고려해 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0-24세 인구는 2014년 현재 2억 7000여명으로 이는 전 세계 해당 연령층 인구의 20%이며 (인구보건복지협회, 2014), 중국 전체 인구로 보면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www.youthindex.org).

국제연합(UN)에서 최근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중국의 14세 이하 인구비중은 17.2%인데 2050년에 13.5%로 3.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세에서 59세 인구 비중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인구 비중은 67.6%에서 50.0%로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5년 15.2%에서 36.5%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Ⅲ-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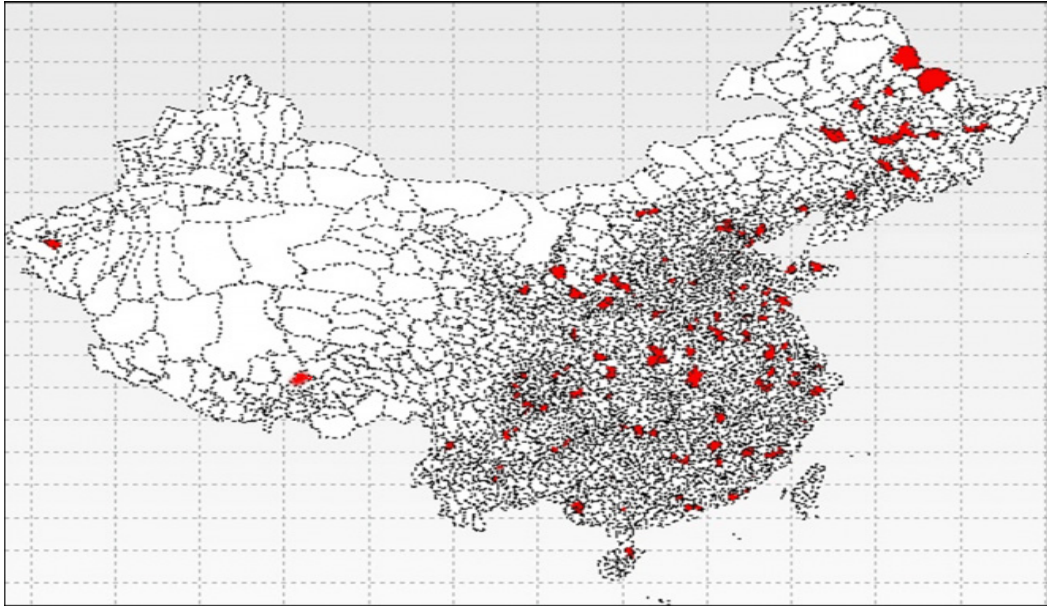


출처: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Publication?Files/Key_Findings_WPP_2015.pdf, p.27

【그림 III-12】 중국의 연령별 2015년 및 2050년 인구분포 전망 결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1980년부터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 인구수가 급감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7천여 명에서 2050년 13억 3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이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으로 출산율이 낮아진 후 오히려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중국 역시 최근 비슷한 상황이다.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작한지 35년 만인 2015년에 두 자녀 출산을 인정하는 정책을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이 예측한 인구 전망치보다는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워낙 영토가 방대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포괄하는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중국판(中國綜合社會調查, 이하 CGSS)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 청소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CGSS는 2003년부터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총 100개구에서 25개 가구를 대상으로 12,0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는 중국의 조사 자료들이 조사비용이나 방대한 조사 범위 등을 이유로 북경이나 상해 등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중국 영역의 실태를 반영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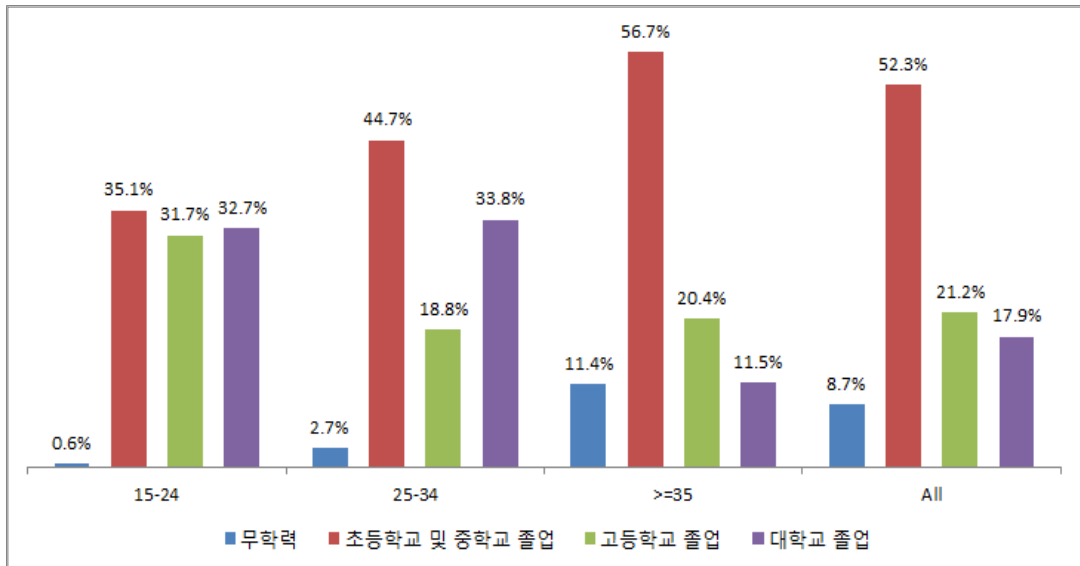
출처: 중국 종합사회조사 홈페이지(<http://www.chinagss.org/index.php?r=index/index>)에서 2015년 11월 9일 추출

【그림 III-13】 중국 종합사회조사 조사 지역 분포

[그림 III-13]은 2009년 CGSS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로 교육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중 대졸자의 비율은 17.9%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졸자의 비율은 21.2%로 나타나고 있고 응답자 중 절반은 중졸 이하였다. 그런데 15세에서 24세 청소년 층의 교육수준 분포는 중국에서 고학력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5-24세 응답자 중 대졸자의 비율은 32.7%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졸자 역시 31.7%로 고졸 이하의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25세에서 34세 응답자를 보면, 대졸자 비율은 33.8%로 높으나 고졸자 비율은 18.8%에 불과해 중졸 이하가 여전히 5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대학 이상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중등교육 단계에서 보편교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여전히 교육수준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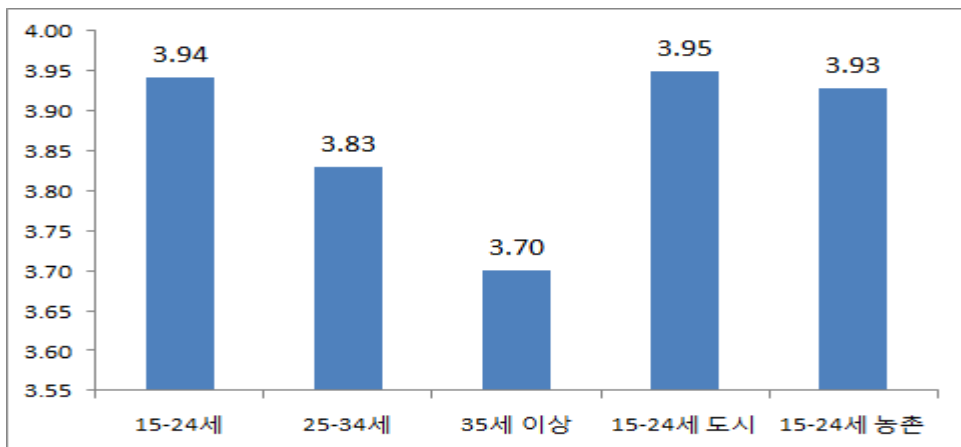
한국만큼 고학력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도 국제적으로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2012년 실시된 OECD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에서 중국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최상의 학업성취능력을 보여주었다(OECD, 2014).



자료: 중국 종합사회조사(CGSS: 中国综合社会调查) 2009년 조사 자료

【그림 Ⅲ-14】 연령별 중국의 교육수준 분포(CGSS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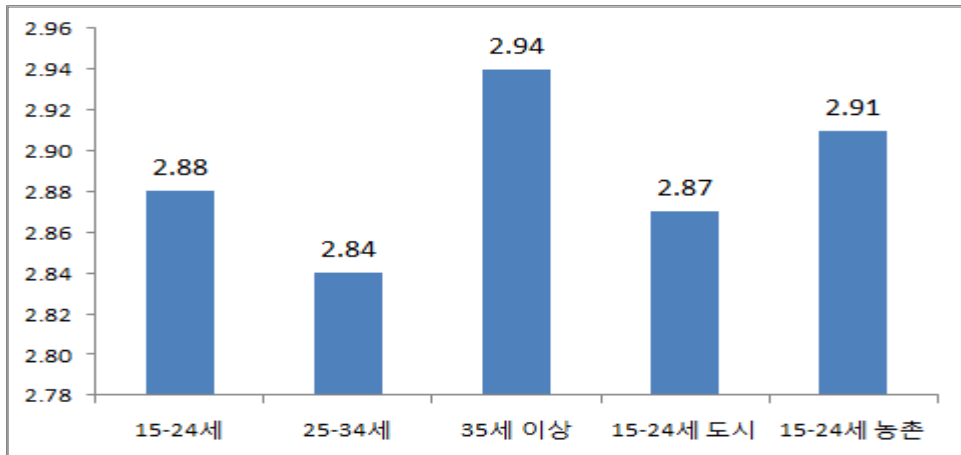
중국은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매우 크므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CGSS (자료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지표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점 척도로 이루어진 행복감과 관련하여 15-24세의 경우 행복감 점수는 3.94점인데 반해서 25-34세는 3.83점, 35세 이상은 3.70점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가 농촌보다는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Ⅲ-15] 참조)



자료: 중국 종합사회조사(CGSS: 中国综合社会调查) 2009년 조사 자료

【그림 Ⅲ-15】 중국 청소년(15-24세)의 행복감 점수(CGSS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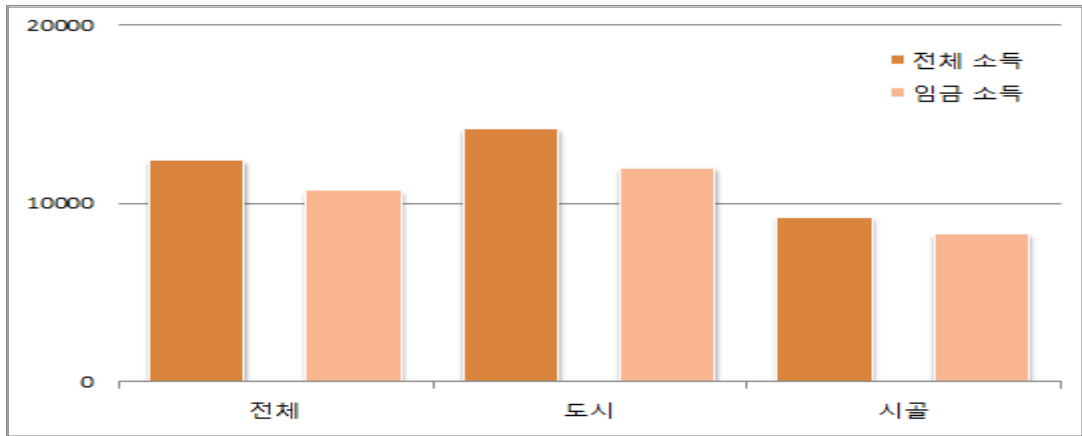
사회적 공평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공평하다는 인식은 35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5-34세의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5-24세 중 도시와 농촌 응답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도시보다는 농촌 청소년들이 중국 사회가 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Ⅲ-16] 참조)



자료: 중국 종합사회조사(CGSS: 中国综合社会调查) 2009년 조사 자료

【그림 Ⅲ-16】 중국 청소년(15-24세)의 사회적 공평성 점수(CGSS 결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소득 수준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림 Ⅲ-17]은 15세에서 24세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전체 소득과 임금 소득을 도농 간에 비교해 제시하고 있다. 농촌의 전체 소득은 도시 소득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소득 역시 농촌 임금 소득은 도시의 69%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소득 차이가 뚜렷하지만 사회적 공평성에 대해서는 농촌이 도시보다 높은 이유는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이 농촌보다는 도시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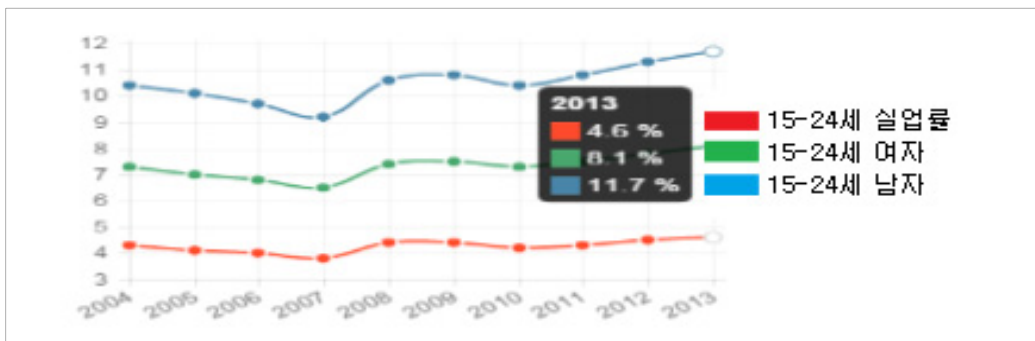


자료: 중국 종합사회조사(CGSS: 中国综合社会调查) 2009년 조사 자료

【그림 III-17】 중국 청소년(15-24세)의 소득 수준 도시-농촌 비교(CGSS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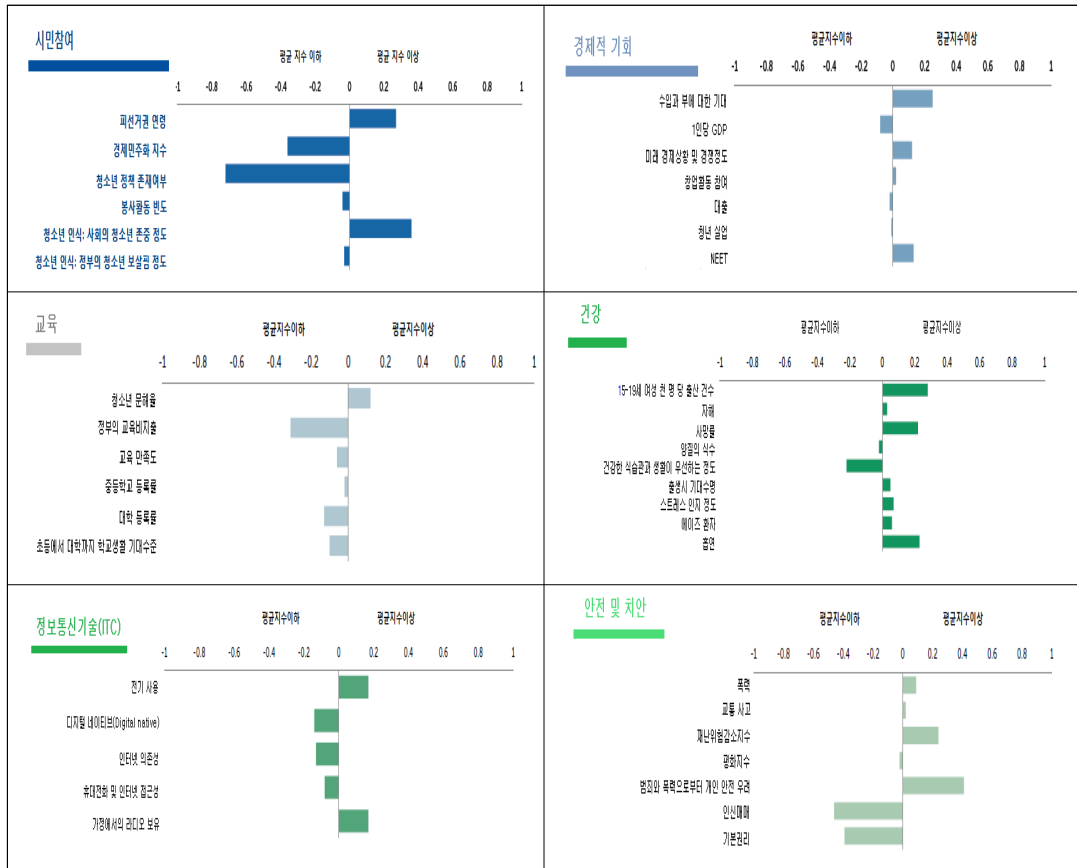
이어서 중국 청소년들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3년 현재 15세에서 24세 남자는 11.7%, 여자는 8.1%로, 전체 실업률 4.6%보다 높다. 2004년부터 청소년 실업률의 변화 추세를 보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9년 높아진 후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III-18] 참조)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2007년 약 32만 명에서 2011년 약 28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형사사범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2012; 채용, 김태익, 육담성, 허창덕, 2013에서 재인용). 전체 청소년 범죄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약 60%에 이르고 있어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채용 외, 2013).



출처: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

【그림 III-18】 중국 15-24세 실업률 연도별 추이



출처: <http://www.youthindex.org/>에서 발췌.

【그림 Ⅲ-19】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중국 결과

2014년 세계청소년웰빙지수(Global Youth Wellbeing Index)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중국은 14위를 차지했다. 영역별로 보면 시민 참여는 28위, 경제적 기회는 10위, 교육은 22위, 건강은 11위, 정보통신기술은 15위, 안전은 14위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민참여영역은 피선거권 연령, 사회에서 청소년이 존중받는다 고 인식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기회영역에서는 1인당 GDP, 대출, 청년 실업을 제외하고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교육영역에서는 청소년 문해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특히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건강영역에서는 양질의 식수와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그림Ⅲ-19] 참조)

2) 중국의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국가에 해당한다(YouthPolicy.org, 2014). 중국이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젊은이들이 대상이다.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200여 개 이상의 관련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다(Ngai, Ngai & Wei, 2011).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청단(共青团)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7천5백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공청단 가입은 14세에서 28세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중국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YouthPolicy.org는 중국의 청소년 연령 규정을 공청단의 가입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Youthpolicy.org에 따르면, 중국에서 법적 성년 연령은 18세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이다.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투표권은 18세부터 주어지며, 범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이다.⁸⁾

중국의 경우 교육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中國教育部, 2010),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서 분석에 제한이 있다. 다만 영어로 발표된 「중국 청소년정책의 재고찰(*Revisiting China's Youth Policy*)」이라는 논문을 토대로 중국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Ngai, Ngai & Wei, 2011). 이 논문에서는 중국 청소년정책의 6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념적인 맥락에서 “중국식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향상”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의 청소년정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공청단(共青团)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별도의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국에서 청소년정책은 공청단 역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청단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산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직업윤리 향상, 학습 독려, 사회주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문화나 여가, 레크레이션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에도 공청단은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 에서 발췌

세 번째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으로 등장한 청소년조직들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청단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형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중국에는 40만 개 이상의 비정부조직(NGO), 비영리조직(NPO)이 있으며 이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생적인 단체나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들 청소년단체나 기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 권리와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법률과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중국의 청소년 관련 법령들은 교화와 통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점차 복지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정숙·김기현, 2015).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들을 재정비해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 번째는 시장지향 경제개혁에서 청소년 실업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교육, 육체적·정신적 건강, 공동체 참여와 같이 청소년들의 발달문제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처럼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청소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청단은 1922년에 중국공산당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14세에서 28세의 청소년이 가입 대상이며 공청단의 가입은 모든 청소년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학생들로 단원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예비 공산당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공청단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엘리트 조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게 되며 전국 각지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은 공청단원이거나 고위 정부 관료들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태자당(太子黨) 출신이거나 중국 상해를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하이방(上海幫) 출신이다. 공청단 출신의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중국 국가주석을 역임한 후진타오(胡錦濤)가 있다(이경자, 2015).

청소년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활동 및 역량 증진과 관련된 정책은 1990년대부터 추진된 「중국아동발전요강(中国儿童发展纲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余雅风, 2008). 이 요강

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비롯해 교육 등 지적체(德智体)의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9년간 의무교육 실시, 고등교육 대중화를 비롯하여 취약 청소년 계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중국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미성년자보호법(未成年人保护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未成年人犯罪法)」,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 등 법령을 꾸준히 제정하고 개정해 왔다. 청소년들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12355 청소년 서비스 센터(12355 青少年服务台)와 청소년 권익수호단체(青少年维权岗) 등을 구성해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余雅风(2008)은 중국 청소년 발전 정책과 관련된 문제점이자 도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취약계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청소년의 불공정한 대우와 남녀 차별 문제가 중국의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전국 형사범죄 중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까지 30%를 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70%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범죄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程福财(2014)은 중국의 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는 중국이 주로 생산주의(生产主义)에 입각한 복지정책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고 시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주의는 사회정책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투자를 확대해 온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1992년부터 추진된 청소년 교육복지의 하향조정(下移) 등이 복지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하향조정은 무상 고등교육 대신에 의무교육 단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복지예산을 바꾼 것을 의미한다. 소수의 엘리트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복지의 방향을 변경해 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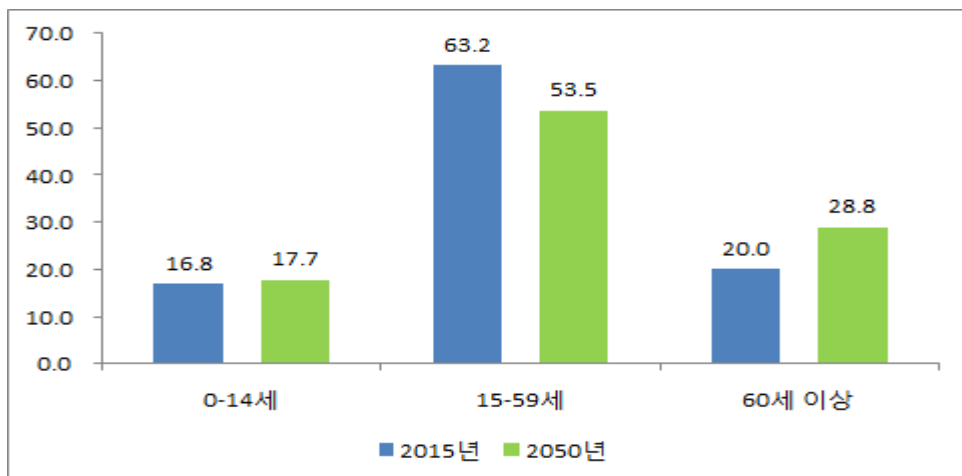
이처럼 중국의 청소년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트 중심인 공청단이 청소년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에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정책 특성

1) 러시아의 청소년 실태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청소년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에서는 청소년 정책 추진의 청소년 연령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적인 통계 자료들에서 15-24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되므로, 이 통계자료에 따라서 청소년 실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인구 실태를 살펴보면, 러시아 역시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현재 러시아의 10-24세 인구는 235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http://www.youthindex.org/>). 전체 러시아 인구는 2015년 현재 1억 4천3백만여 명인데 국제연합(UN)에서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 2050년에 1억 2천8백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령별로 인구 전망치를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인구 비중은 2015년 16.8%에서 2050년에 1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러시아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15세에서 59세 인구는 63.2%에서 53.5%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에서 28.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그림Ⅲ-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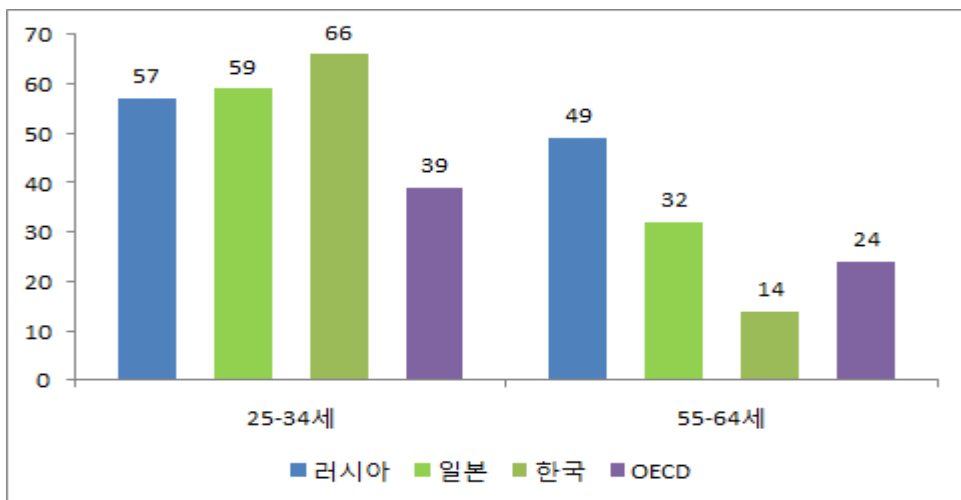


출처: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Publication?Files/Key_Findings_WPP_2015.pdf, p.30

【그림 Ⅲ-20】 러시아의 연령별 2015년 및 2050년 인구분포 전망 결과(%)

러시아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이 이미 오래 전부터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인적 자원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장년층인 55-64세 인구 중 49%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에 해당하는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7%에 이르고 있다. 각각 OECD 국가 평균이 24%와 39%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보면 고학력 추세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한국과 일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러시아를 앞지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 전체의 고학력 수준은 한국과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Ⅲ-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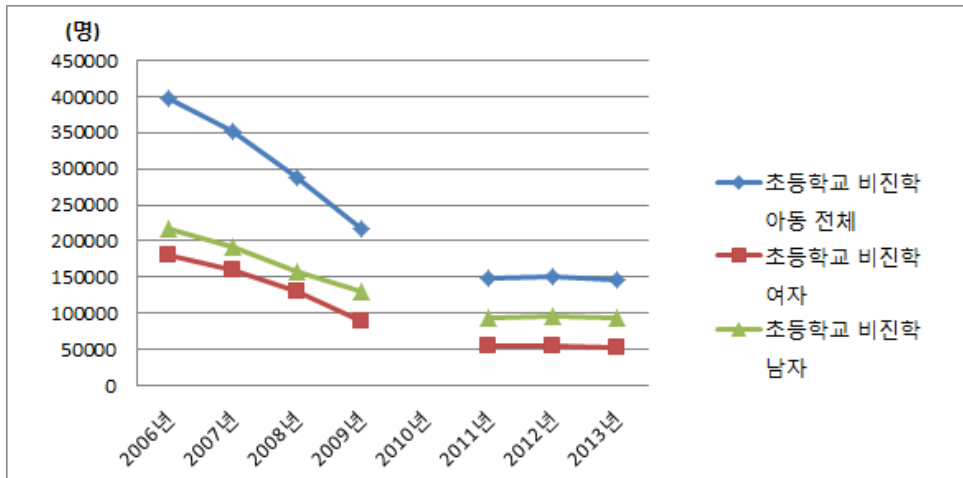
그런데 러시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실시된 OECD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에서 러시아는 66국 가운데 읽기 37위, 수학 34위, 과학 37위로 중위권의 성적을 나타냈다(OECD, 2014).



출처: OECD(2014), PISA 2012 results in focus.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2015년 10월 21일 인출.

【그림 Ⅲ-21】 러시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한·일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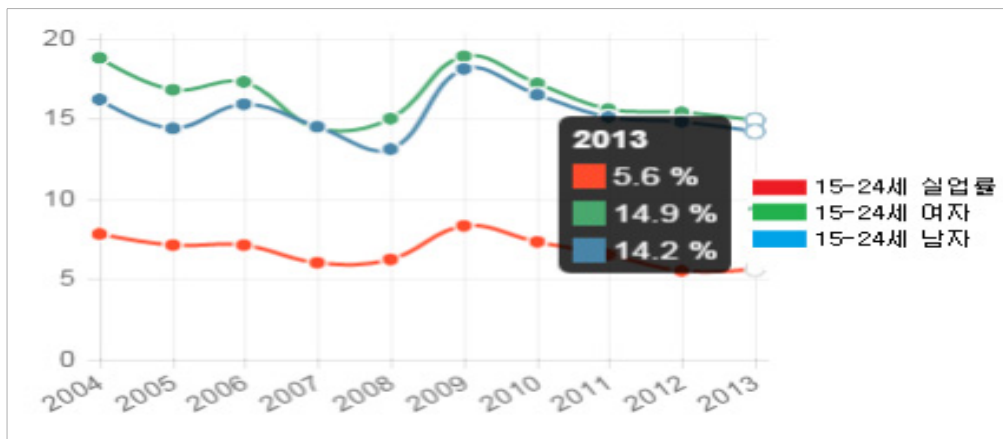
러시아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숫자는 2006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5만 천 여 명, 남자는 9만 4천 여 명이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Ⅲ-22] 참조)



출처: World Bank 홈페이지(<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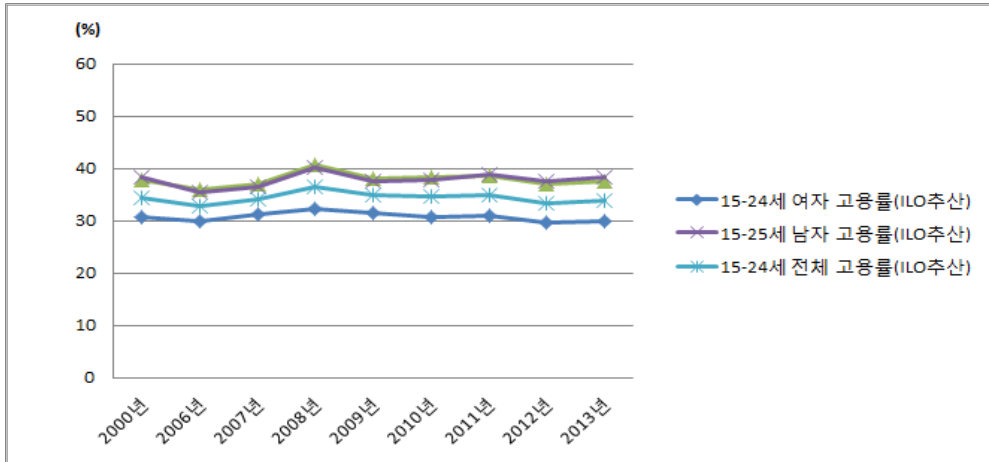
【그림 Ⅲ-22】 러시아의 초등학교 비진학 아동의 연도별 추이(명)

2013년 현재 러시아의 15-24세 청소년층의 실업률은 남자 14.2%, 여자 14.9%이며, 이는 전체 연령층 실업률 5.6%에 비하여 높은 수치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청소년 실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그림Ⅲ-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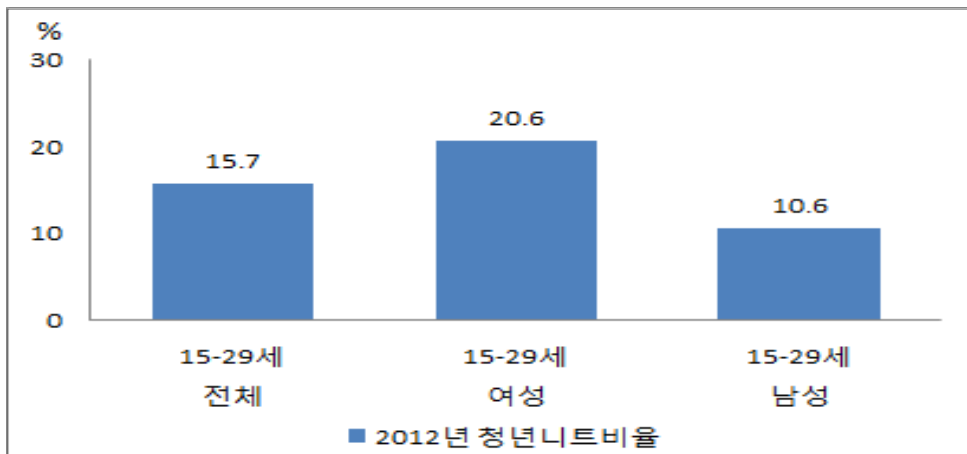
출처: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russia/>

【그림 Ⅲ-23】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



출처: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

【그림 Ⅲ-24】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고용률의 연도별 추이(%)



출처: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

【그림 Ⅲ-25】 러시아의 청소년(15-24세) 니트 비율(%)

러시아 청소년층 가운데 니트족의 비율은 15.7%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20.6%, 남성은 10.6%로 여성 비율이 남성의 두 배에 이른다. 러시아의 니트 비율은 한국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청소년 유희인력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계청소년웰빙지수(Global Youth Wellbeing Index)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러시아는 25위로 낮은 편에 속했다. 영역별로 보면 시민 참여는 30위,

경제적 기회는 15위, 교육은 13위, 건강은 23위, 정보통신기술은 13위, 안전은 29위를 차지하였다.

먼저 시민 참여영역은 피선거권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경제적 기회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에 가까웠지만 미래 경제상황 및 경쟁정도와 창업활동 참여 부문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육영역에서는 정부의 교육비지출과 교육 만족도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머지 영역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건강영역에서는 여자 청소년 출산율, 양질의 식수, 에이즈환자 수 부문을 제외하고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정보통신기술영역에서는 가정에서의 라디오 보유 부문만 제외하고 대체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안전 및 치안영역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사고, 평화지수, 인신매매 부문의 점수가 낮았다.([그림 III-26] 참조)



출처: <http://www.youthindex.org/>에서 발취

【그림 III-26】 세계 청소년 웰빙지수 러시아 결과

2) 러시아의 청소년정책 현황 및 특성

러시아는 러시아연방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의 청소년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에서 법적 정의는 아니지만 청소년을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통계청은 청소년 범주를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4개 집단으로 구분해 통계결과를 제시하고 있다(YouthPolicy.org, 2014).

Youthpolicy.org에 따르면, 결혼 연령과 관련하여 부모동의가 필요 없는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 부모동의가 필요한 연령은 남녀 모두 16세이다. 투표권은 18세에 부여되며, 피선거권을 갖는 연령은 21세이다. 법적 성년 나이는 18세이며, 범죄 처벌 연령은 14세이다.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 및 공공서비스 아카데미(РАНХиГС)’에서 제시한 「러시아 차세대 2000-2025: 인간 자본의 발전」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РАНХиГС, 2013).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전망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러시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차세대 정책의 핵심적인 영역 1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공식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포함하여 차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차세대가 정규교육을 통해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비공식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보충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을 강화시킨다.

두 번째는 차세대가 중심이 되어 창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독립정신과 함께 자기실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앞둔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진로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차세대법률 클리닉 등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마약이나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고 시민사회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점차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상황에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젊은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차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열 번째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열한 번째는 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청소년정책 예산을 확보하고 청소년 국가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국가기금과 관련하여 차세대정책 기금을 7억 루블 규모로 유지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4억 5천에서 5억 루블 규모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차세대정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차세대조정센터를 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는 미디어의 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키우고 차세대들의 미디어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4. 한국과 3국의 청소년정책 비교 및 시사점

1) 청소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살펴보고 동북아지역의 정책들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대상인 청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2>는 국내 법령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1에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규정이 다르나 대체로 「청소년기본법」의 연령규정을 따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도 연령 규정이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제2조의 1에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로 정의하고 있다. 「민법」에서 성년의 기준으로 19세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연령 정의로는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 「주민등록법」 제24조, 「공직선거법」 제15조, 「국민투표법」 제7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조를 비롯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등이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이 20대 초반을 포괄하는 대신, 청소년 보호나 아동에 관한 규정이 18세나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정책적 지원이나 수혜 대상에 관한 규정이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 후자는 대체로 성인들에 대한 아동 혹은 청소년 보호라는 맥락에서 「민법」상의 성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2 국내 법령 청소년 연령 규정 현황

법령	대상	연령	비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3조1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제4조 ①의 청소년중 연령은 9-18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	제2조1,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9-24세 이하	제2조1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제3조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제2조4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	18세 미만	제2조1,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제2조1
공연법	연소자	18세 미만	제2조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	18세 미만	제2조1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제2조13
	유아	6세 미만	제11조
	운전면허	18세 미만	제82조1,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근로기준법	최저연령	15세미만	제64조 ①
	연소근로자	18세미만	제65조 ①, 별도로 연령을 정의하는 조항은 없으나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로 규정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	제9조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제2조
	촉법소년	10-14세 미만	제4조 ①,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형사미성년자로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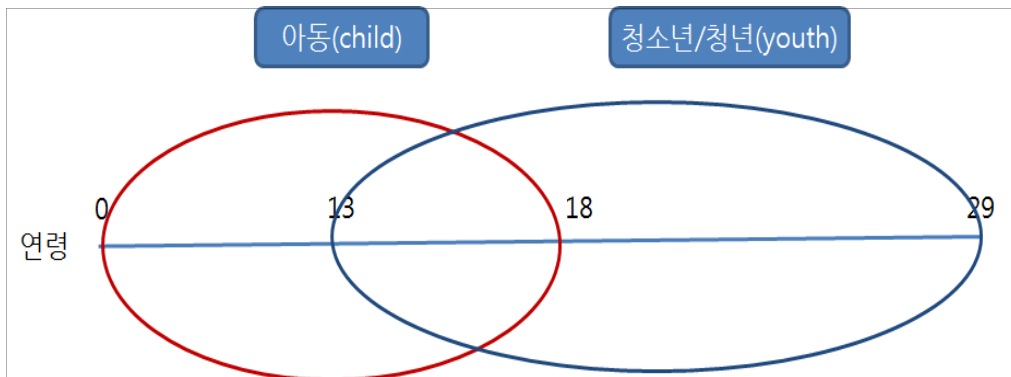
법령	대상	연령	비고
민법	미성년자	19세 미만	제4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17세 이상	제24조
공직선거법	선거권	19세 이상	제15조 ①
국민투표법	투표권	19세 이상	제7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15년 6월 10일)

표 Ⅲ-3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책 대상 연령 규정 비교

연령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한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러시아는 20대 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책대상으로써 청소년(youth)의 연령 정의를 3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절반(50.3%)이 넘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책대상 연령 규정을 최소한 20대 후반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3> 참조)



출처: Opetus-ja kulttuuriministeriö(2012)

【그림 III-27】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개념도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생애주기적 연령 접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Opetus-ja kulttuuriministeriö, 2012).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법(Youth Act)」에 정책 대상 연령을 규정 하고 있다. 2006년 개정 시에 대상 연령을 29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이 때 정책 대상을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대상 연령을 제시하였다. [그림 III-27]은 핀란드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2-2015)에서 제시한 연령 개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학문적, 역사적, 정책적, 상식적인 연령 규정에 있어서 중복되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 대상이 어떤 측면에 따른 것이든,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특정 시점의 연령일 뿐이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연령 규정이 분리가 된다면 지원 범위에 혼선이 생기게 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령 범위를 통합하고 확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정책 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령 규정을 20대 후반까지 포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 나아가 청년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미래 세대에 관한 연령 규정을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①에 근거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법적근거에 의해 처음 수립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이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현재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추진 중에 있다.

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이며 목표는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2: 33). 5차 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행복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육성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김기현, 2014). 정책 목표는 정책영역과 관련하여 청소년 활동을 통한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비롯해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책 과제는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15가지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제시하고 있고 중점과제별로 75개의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I-28] 참조).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계획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한 가지 다른 부분은 청소년들의 성인이 이행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청년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과 연동되는 문제로 한국을 제외한 3개 국가들은 정책 대상에 20대 후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성인이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지 10대 시기의 진로체험문제와 20대 시기의 자립문제가 15가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나라는 30대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90개 이상의 국가들과 다르게 20대나 30대를 위한 청소년정책이 없다. 청년정책이 별도로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법령과 정책기본계획 등의 정책 영역을 구축하여 추진 중에 있지도 않다. 청년 관련 법령은 한시법으로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부이고 주관부처도 분명하지 않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의 청년들이 정책 대상이므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청년 정책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정책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30, 보완45)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4.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9.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3.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4.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p. 33.

【그림 Ⅲ-28】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정책 대상 연령 규정과 맞물려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제언

제 I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198개 국가 중에서 청소년담당 국가부처가 존재하는 곳은 190개 국가로 96% 수준이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youth)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135개 국가 중 98개 국가로 72.6%에 이른다. 이는 현재 많은 국가가 청소년 명칭을 부처 명에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179개 국가/사회 중 절반(50.3%)이 넘는 90개 국가/사회에서 30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정책 연령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연령 규정을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0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청소년정책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일본에서는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靑少年)’명칭 대신 ‘아동, 청년(若子)’으로 바꾸고 정책 대상을 30대까지 포괄하였다. 중국은 독립적인 국가정책으로 청소년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청소년정책의 추진주체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인 공청단(共靑團)의 역할과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 조직을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청소년 권리와 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정비, 청소년 실업문제 대비, 청소년들의 발달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변화된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환경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창업 지원, 성인기 이행 지원, 일자리 확대, 청소년 보호, 이민자 가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큰 차이점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20대

* 이 장은 김정숙 부연구위원,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후반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부분을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상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에서는 향후 동북아 지역 청소년정책 연구와 관련한 정책 제언을 정리하였다.

2. 정책제언

1) 법령 정비

전 세계 및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대상 연령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표 IV-1>에 제시되어 있듯이 1안으로 정책 대상 연령에 20대 후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령과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없이 청소년정책의 영역을 확장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표 IV-1 청소년기본법 연령 규정 개정(안)

안	기존 법안(제3조(정의) 1)	개정(안)
1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청년 "이란 9세 이상 2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안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청년 "이란 3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IV-2 독일의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 규정 현황

법률	대상	연령규정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연소노동자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년 (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 출처: 김기현(2012)

그런데 정서적으로 20대를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청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 법령에 아동(Kind), 청소년(Jugendliche), 청년(Heranwachsende), 젊은 성인(Junge Volljährige) 등의 용어를 용례에 따라 명확하게 사용하고 중복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표 V-25> 참조)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이 2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동시에 각 법령별로 특별한 사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쳤던 연령규정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인 과제로 연령 통일과 함께 청소년과 청년을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애주기적인 접근으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아우르는 법 개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 대상 연령을 34세로 연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0대 초반까지 정책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방안 강화

전 세계 및 동북아지역의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듯이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5대 영역 중 복지와 함께 묶여 있는 정책 영역을 이 과제로 분리해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기반 구축을 제외하고 아동의 ‘보호’와 청소년의 ‘역량증진’, 그리고 청년의 ‘자립지원’이라는 맥락이 드러나도록 정책 영역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16년부터 5차 기본계획을 평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될 6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자립지원 부분을 중점과제에서 정책 영역 수준으로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령 상 청년을 분명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면 정책기본계획에서 2016년부터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3) 동북아 지역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과제 공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 가장 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른 대륙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북아지역 연구자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정책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책추진주체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이 동북아지역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공통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 내 문 헌 】

-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김정숙·김기현(201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NYPI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통권 제4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 방향(안).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비공개).
- 김기현(201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 평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간평가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윤철경·김영지·김기현·오성배(2008). 신정부 청소년정책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호(2012). 전후 일본 청소년정책의 단계적 변화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5), 319-343.
- 이경자(2015). 중국의 청소년 정책과 공청단의 역할. 청소년현안 Blue Note Vol. 3 가을호.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10.
- 이청훈 편역(2015). 아동·청년지원시책(청소년대책). 일본 아동·청년백서 2014.
- 인구보건복지협회(2014). 유엔인구기금 2014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 서울: 인구보건복지협회
- 채용·김태익·육담성·허창덕(2013). 한·중 청소년범죄 관련법 및 예방정책 비교. 교정연구, 61, 279-299

【 외 국 문 헌 】

(영 어)

- Ngan-Pun Ngai, Sek-Yum Ngai and Fang Wei(2011). Revisiting China's Youth Policy. *Forum* 21: *European Journal on Child and Youth Policy*, 17, 54-65.
- OECD (2014). PISA 2012 results in focus.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2015년 10월 21일 인출.
- Opetus-ja kulttuuriministeriö(2012). *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2012-2015*. http://www.youthpolicy.org/national/Finland_2012_Child_Youth_Programme.pdf.
- Youthpolicy.org(2014). The State of Youth Policy in 2014. A Publication of Youth Policy Press. http://www.youthpolicy.org/library/wp-content/uploads/library/2014_State_Youth_Policy_2014_En.pdf
- UN(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http://esa.un.org/unpd/wpp/Publication?Files/Key_Findings_WPP_2015.pdf.

(일 본 어)

-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2010). 子ども・若者ビジョン. http://www8.cao.go.jp/youth/suisin/pdf/vision_gaiyo.pdf에서 2015. 7. 8 인출.
- 内閣府(2015). 「子ども・若者白書」(平成27年度版)

(중 국 어)

- 中國教育部(2010). 國家中長期人才發展計劃綱要(2010~2020年).
-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12). 統計年譜.
- 程福財(2014). 超越生产主义: 1992年以来我国青少年福利政策发展的逻辑分析. 华东理工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期第31~39,86页
- 余雅风(2008). 改革开放三十年与青少年发展政策. 人民网-理论频道.

(러 시 아 어)

- РАН И ГС(2013). МОЛОДЕЖЬ РОССИИ 2000-2025: РАЗВИТИЕ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http://www.youthpolicy.org/library/wp-content/uploads/library/2013_Russia_Youth_Policy_Programme.pdf

【 인터넷 검색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2015년 6월 10일 모두 인출

청소년기본법(법률 제13370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7&efYd=20150923#0000>

청소년활동진흥법(법률 제13182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030&efYd=20150804#0000>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3371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8&efYd=20150622#0000>

청소년복지지원법(법률 제12700호, 2014.5.2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83&efYd=20150529#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61호, 2014.1.2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20&efYd=20140929#0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2014.5.28.,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300&efYd=20150529#0000>

아동복지법(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2&efYd=20150928#00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68호, 2015.6.2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255&efYd=20151223#0000>

장애아동복지지원법(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42&efYd=20151119#00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88&efYd=20141119#0000>

공연법(법률 제13298호, 2015.5.18.,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2410&efYd=20141119#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 2015.5.18.,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05&efYd=20151119#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06호, 2015.5.1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06&efYd=20151119#0000>

도로교통법(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43&efYd=20150811#0000>

근로기준법(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형법(법률 제12898호, 2014.12.30.,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efYd=20141230#0000>

소년법(법률 제13524호, 2015.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민법(법률 제12777호, 2014.10.15.,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0862&efYd=20151016#0000>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999&efYd=20151119#0000>

공직선거법(법률 제13617호, 2015.12.24.,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7801&efYd=20151224#0000>

국민투표법(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1737&efYd=20090212#0000>

세계은행(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country/china/>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http://data.worldbank.org/country/russia/>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Youthpolicy.org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china/>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japa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russia/>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Youthindex.org

<http://www.youthindex.org/>에서 2015년 11월 3일 인출.

중국 종합사회조사(CGSS)

<http://www.chinagss.org/index.php?r=index/index/>에서 2015년 11월 9일 인출.

.....

부록

[부 록]

1. 전 세계 청소년정책 대상연령 및 부처명¹⁰⁾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	아프카니스탄 (Afghanistan)	18-35세	정보 및 문화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ulture)
2	알바니아 (Albanian)	15-29세	청소년 및 사회복지부 (Ministry of Youth and Social Welfare)
3	알제리 (Algeria)	15-29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4	안도라 (Andorra)	16-29세	교육 및 청소년부(Ministry of Education and Youth)
5	앙골라 (Angola)	15-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6	안티과 & 바브다 (Antigua & Barbuda)	12-30세	교육, 체육, 청소년 및 여성부(Ministry of Education, Sports, Youth and Gender Affairs)
7	아르헨티나 (Argentina)	15-29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8	아르메니아 (Armenia)	16-30세	체육 및 청소년부(Ministry of Sports & Youth Affairs)
9	호주 (Australia)	12-24세	교육 및 고용, 노사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10	오스트리아 (Austria)	14-24세	경제 및 가족, 청소년부 (Ministry for Economy, Family and Youth)
11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14-29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
12	바하마 (Bahamas)	16-24세	청소년 및 문화, 체육부 (Ministry of Youth, Sports & Culture)
13	바레인 (Bahrain)	-	청소년 및 체육부 (General Organization for Youth and Sports)
14	방글라데시 (Bangladesh)	18-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5	바베이도스 (Barbados)	15-29세	청소년 및 문화,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Youth)

10) 이 내용은 Youthpolicy.org의 홈페이지(<http://www.youthpolicy.org/nationalyouthpolicies/>)에서 각 국가별로 제시된 현황표 (fact-sheet)를 참고하여 국가별로 정책 대상 연령과 부처명을 정리해 제시한 것임.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6	벨라루스 (Belarus)	14-31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17	벨기에 (Belgium)	0-30세	문화, 청소년, 체육 및 미디어부(Ministry of Culture, Youth Sports and Media) (Flemish and French Communities)
		12-26세	문화, 미디어 및 관광부(Ministry for Culture, Media and Tourism (German-Speaking Community))
18	벨리즈 (Belize)	15-29세	교육 및 청소년, 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19	베냉 (Benin)	12-35세	청소년 및 체육, 여가부(Ministry of Youth, Sports and Recreation)
20	부탄 (Bhutan)	13-24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1	볼리비아 (Bolivia)	18-30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nor department)
22	보스니아&헤르체고 비나 (Bosnia & Herzegovina)	15-30세	가족,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Family, Youth & Sports)
23	보츠와나 (Botswana)	15-35세	청소년 및 체육, 문화부 (Ministry of Youth, Sports and Culture)
24	브라질 (Brazil)	15-29세	국가청소년사무국(National Youth Secretariat)
25	브루나이 (Brunei)	15-40세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s)
26	불가리아 (Bulgaria)	15-29세	교육, 청소년 및 체육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s)
27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15-35세	청소년, 전문 교육 및 고용부(Ministry of Youth, Professional Education and Employment)
28	부룬디 (Burundi)	15-26세	청소년, 체육 및 문화부 (Ministry of Youth, Sports and Culture)
29	캄보디아 (Cambodia)	15-30세	교육,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Youth & Sports (MoEYS))
30	카메룬 (Cameroon)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for Youth and Sports)
31	카보베르데 (Cape Verde)	15-25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MJUV))
3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33	차드 (Chad)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34	칠레 (Chile)	15-29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35	중국 (China)	14-28세	공청단(All-China Youth Federation)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36	콜롬비아 (Colombia)	14-26세	청소년국가시스템(National System of Youth (SNJ))
37	코모로 (Comoros)	25세 이하	교육, 연구, 문화 및 예술부 (The Ministry Education, Research, Culture and Arts)
38	콩고-브라자빌 (Congo-Brazzaville)	0-35세	청소년 및 시민교육부 (Ministry of Youth and Civic Education)
39	콩고-킨샤사 (Congo-Kinshasa)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40	코스타리카 (Costa Rica)	12-35세	문화 및 청소년부(Ministry of Culture and Youth)
41	크로아티아 (Croatia)	15-29세	사회정책 및 청소년부 (Ministry of Social Policy and Youth)
42	쿠바 (Cuba)	30세 이하	-
43	키프로스 (Cyprus)	10-29세	키프로스 청소년협의회(Cyprus Youth Council)
44	체코 (Czech Republic)	15-30세	아동 및 청소년 체코협의회 (Czech Council of Children and Youth (CRDM))
45	덴마크 (Denmark)	15-29세	덴마크 청소년 협의회(Danish Youth Council (DUF))
46	지부티 (Djibouti)	15-24세	청소년 및 체육 사무국 (Secretariat of State for Youth and Sports)
47	도미니카 (Dominica)	15-30세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 Sports)
48	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	10-35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49	에콰도르 (Ecuador)	18-29세	교육 및 사회부 (Ministry for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MIES))
50	이집트 (Egypt)	18-35세	청소년부(Ministry of State for Youth Affairs)
51	엘살바도르 (El Salvador)	15-24세	청소년국제기구(National Institute of Youth)
52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25세 이하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53	에리트레아 (Eritrea)	15-24세	-
54	에스토니아 (Estonia)	7-26세	교육 및 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55	에티오피아 (Ethiopia)	15-29세	청소년 및 체육문화부 (Ministry of Youth, Sports and Culture (MYSC))
56	피지 (Fiji)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 Sports (MYS))
57	핀란드 (Finland)	29세 이하	교육 및 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58	프랑스 (France)	3-30세	체육, 청소년, 대중교육 및 지역사회부(Ministry for Sports,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59	가봉 (Gabon)	15-35세	청소년, 체육 및 여가부 (Ministry of Youth, Sports and Leisure)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60	감비아 (Gambia)	15-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MOYS))
61	조지아 (Georgia)	14-29세	체육 및 청소년부(Ministry of Sport and Youth Affairs)
62	독일 (Germany)	12-26세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Ministry of Family, Senior, Female, and Youth) 독일연방청소년협의회 (German Federal Youth Council (DBJR))
63	가나 (Ghana)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64	그리스 (Greece)	15-35세	교육 및 종교부 (Ministry of Education & Religious Affairs)
65	그레나다 (Grenada)	15-29세	청소년 권리 및 체육부 (Ministry of Youth Empowerment & Sports (MoYES))
66	과테말라 (Guatemala)	13-30세	국제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uncil (CONJUVE))
67	기니비사우(Guinea-Bissau)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Conference of Francophone Ministers of Youth and Sports (CONFES))
68	기니-코나크리 (Guinea-Conakry)	15-35세	청소년 및 청소년 권한부(Ministry of Youth and Youth Employment (MoY&YE))
69	가이아나 (Guyana)	10-29세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 (MCYS))
70	아이티 (Haiti)	15-24세	청소년, 체육 및 시민부 (Ministry of Youth, Sport and Civic Action)
71	온두라스 (Honduras)	12-30세	국제청소년기구(National Youth Institute)
72	헝가리 (Hungary)	15-29세	인적 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73	아이슬란드 (Iceland)	6-25세	교육, 과학 및 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74	인도네시아 (Indonesia)	16-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75	이란 (Iran)	15-29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ffairs and Sports)
76	이라크 (Iraq)	10-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77	아일랜드 (Ireland)	15-24세	아일랜드 국제청소년 협의회 (National Youth Council of Ireland (NYCI))
78	이스라엘 (Israel)	13-18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s (MoE))
79	이탈리아 (Italy)	15-35세	청소년정책 및 체육부 (Ministry for Youth Policies and Sports)
80	아이보리코스트 (Ivory Coast)	16-35세	청소년, 체육 및 여가부(Ministry for the Promotion of Youth, Sports and Leisure)
81	자메이카 (Jamaica)	15-24세	청소년 및 문화부(Ministry of Youth & Culture)
82	일본 (Japan)	0-30세	내각부(Cabinet Office)
83	요르단 (Jordan)	12-30세	청소년협의회(Higher Council for Youth (HCY))
84	카자흐스탄 (Kazakhstan)	14-29세	교육 및 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 Science)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85	케냐 (Kenya)	15-30세	청소년부(the Ministry of Youth Affairs)
86	키리바시 (Kiribati)	15-29세	내무 및 사회부 (Ministry of Internal and Social Affairs (MISA))
87	코소보 (Kosovo)	15-24세	코소보 중앙청소년활동협의회 (Central Youth Action Council of Kosovo (CYAC))
88	쿠웨이트 (Kuwait)	18-30세	청소년부(Ministry of State for Youth Affairs)
89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14-28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Affairs)
90	라오스 (Laos)	15-30세	-
91	라트비아 (Latvia)	13-25세	교육 및 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92	레바논 (Lebanon)	15-29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93	레소토 (Lesotho)	15-35세	성 및 청소년, 체육 및 여가부 (Ministry of Gender & Youth, Sports & Recreation)
94	라이베리아 (Liberia)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95	리비아(Libya)	-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 Sports)
96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	-
97	리투아니아 (Lithuania)	14-29세	사회 안전 및 노동부 (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98	룩셈부르크 (Luxembourg)	12-30세	국제교육, 아동 및 청소년부 (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Children and Youth)
99	마케도니아 (Macedonia)	15-24세	청소년 및 체육기구(Agency for Youth and Sports)
100	마다가스카 (Madagascar)	14-35세	청소년 및 여가부 (Ministry of Youth and Recreation (MJL))
101	말라위 (Malawi)	10-35세	말라위 국제 청소년 협의회 (National Youth Council of Malawi (NYCoM))
102	말레이시아 (Malaysia)	15-4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OYS))
103	몰디브 (Maldives)	18-35세	인적 자원,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er of Human Resources, Youth and Sports (MHRYS))
104	말리 (Mali)	-	청소년 및 시민부 (Ministry of Youth and Citizenship Building)
105	몰타 (Malta)	13-30세	교육 및 고용부(Ministry of Education and Employmen)
106	모리타니 (Mauritania)	12-30세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and Sport)
107	멕시코 (Mexico)	12-29세	멕시코 청소년 기구 (Mexican Institute of Youth (IMJUVE))
108	미크로네시아 (Micronesia)	15-34세	미크로네시아 국제 청소년 협의회 연방공화국(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National Youth Council (FSMNYC))
109	몰도바 (Moldova)	16-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for Youth and Sport)
110	모나코 (Monaco)	-	교육, 청소년 및 체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 Youth and Sport (DEYS))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11	모잠비크 (Mozambique)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
112	미얀마 (Myanmar)	16-18세	사회복지, 종교 및 재식민부 (Ministry of Social Welfare, Relief and Resettlement)
113	나미비아 (Namibia)	16-30세	청소년, 국제서비스 및 체육문화부(Ministry of Youth, National Services, Sport & Culture)
114	나우루 (Nauru)	15-34세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115	네팔 (Nepal)	16-4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MoYS))
116	네덜란드 (Netherlands)	0-24세	건강, 복지 및 체육부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VWS))
117	뉴질랜드 (New Zealand)	12-24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118	니카라과 (Nicaragua)	18-30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119	니제르 (Niger)	15-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20	나이지리아 (Nigeria)	18-35 years	청소년개발연방부 (Federal Ministry of Youth Development)
121	니우에 (Niue)	15-34세	사회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
122	북한 (North Korea)	15-26세	-
123	노르웨이 (Norway)	12-29세	아동 및 가족부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
124	오만 (Oman)	-	-
125	파키스탄 (Pakistan)	15-29세	-
126	팔라우 (Palau)	15-34세	사회 및 문화부 (Ministry of Community and Cultural Affairs)
127	팔레스타인 (Palestine)	13-29세	청소년 및 체육부 (Higher Council for Youth and Sports (HCYS))
128	파나마 (Panama)	15-29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
129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12-25세	종교, 청소년과 지역사회개발부(Ministry for Religion,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130	파라과이 (araguay)	15-29세	교육 및 문화부(Ministry for Education and Culture)
131	페루 (Peru)	15-29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132	필리핀 (Philippines)	15-30세	-
133	폴란드 (Poland)	15-25세	국제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134	포르투갈 (Portugal)	-	-
135	카타르 (Qatar)	15-24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36	루마니아 (Romania)	14-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37	러시아 (Russia)	15-29세	교육 및 과학부(Ministry for Education & Science)
138	르완다 (Rwanda)	14-35세	청소년 및 정보통신부(Ministry of Youth & ICT)
139	세인트키츠 네비스 (Saint Kitts and Nevis)	35세 이하	청소년, 체육, 정보기술 및 통신, 우체부 (Ministry of Youth Empowerment, Sports, Information Technology, Telecommunications & Posts)
140	사모아 (Samoa)	18-35세	여성, 지역사회 및 사회개발부(Ministry of Women,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141	산마리노 (San Marino)	16-32세	영토, 환경, 농업, 통신기술, 체육, 시민 보호 및 무역관련 사무국(Secretary of State for Territory, Environment, Agriculture, Telecommunications, Sport, Civil Protection and Trade relations)
142	상투메 프린시페 (São Tomé and Príncipe)	15-35세	사회적 소통 및 청소년, 체육부 (Ministry of Social Communication, Youth & Sports)
143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15-24세	사회부 및 문화, 정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144	세네갈 (Senegal)	15-35세	청소년, 고용 및 시민가치 촉진부(Ministry of Youth, Employment and Promotion of Civic Values)
145	세르비아 (Serbia)	15-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
146	세이셸 (Seychelles)	15-30세	세이셸 국제 청소년 협의회 (Seychelles National Youth Council (SNYC))
147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15-35세	청소년부(Ministry of Youth Affairs (MOYA))
148	싱가포르 (Singapore)	15-35세	문화 및 청소년부 (Ministry for Culture, Community and Youth (MCCY))
149	슬로바키아 (Slovakia)	30세 이하	교육, 과학, 연구 및 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Research and Sport of the Slovak Republic)
150	슬로베니아 (Slovenia)	15-29세	교육, 과학 및 체육부 (Ministry for Education, Science and Sport)
151	솔로몬 (Solomon Islands)	14-29세	솔로몬국제청소년협의회 (Solomon Islands National Youth Congress (SINYC))
152	소말리아 (Somalia)		체육 및 청소년부(Minister of Sports and Youth)
153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14-35세	국립청소년기구 (National Youth Development Agency (NYDA))
154	대한민국 (South Korea)	9-24세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55	남수단 (South Sudan)	18-35세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 Sports (MoCYS))
156	스페인 (Spain)	15-29세	건강, 사회서비스 및 평등부 (Ministry of Health, Social Services and Equality)
157	스리랑카 (Sri Lanka)	15-29세	청소년 및 기술개발부 (Ministry of Youth Affairs & Skill Development)
158	수단 (Sudan)	15-24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 Sports (MoYS))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59	수리남 (Suriname)	0-30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60	스와질란드 (Swaziland)	15-35세	체육, 문화 및 청소년부 (Ministry of Sport, Culture and Youth Affairs)
161	스웨덴 (Sweden)	13-25세	국제 스웨덴 청소년 조직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sations(LSU))
162	스위스 (Switzerland)	30세 이하	스위스 국제 청소년 협의회 (Swiss National Youth Council (SNYC))
163	시리아 (Syria)	15-25세	-
164	타이완 (Taiwan)	12-24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165	타지키스탄 (Tajikistan)	14-30세	-
166	탄자니아 (Tanzania)	15-35세	노동, 고용 및 청소년 개발부, 정보, 문화, 청소년 및 체육부(the 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Youth Development, an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Youth and Sports)
167	타이 (Thailand)	18-25세	아동 및 청소년 성인의 보호촉진 사무국 (Office of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hildren, Youth, the Elderly and Vulnerable Groups (OPP))
168	동티모르 (Timor-Leste)	16-30세	국제청소년협의회(National Youth Council (CNJTL))
169	토고 (Togo)	15-24세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개발부(Ministry of Basic Development, Crafts, Youth and Youth Employment)
170	통가 (Tonga)	15-34세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
171	트리니다드&토바고 (Trinidad & Tobago)	12-29세	성, 청소년 및 아동개발부 (Ministry of Gender, Youth and Child Development)
172	튀니지 (Tunisia)	15-29세	청소년, 체육, 여성 및 가족부 (Ministry of Youth, Sports, Women and Families)
173	터키 (Turkey)	14-29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74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14-30세	-
175	투발루 (Tuvalu)	15-34세	투발루국제청소년협의회 (Tuvalu National Youth Council (TNYC))
176	우간다 (Uganda)	12-30세	청소년 및 아동부(The Minister for Youth and Children)
177	우크라이나 (Ukraine)	14-3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78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11-25세	문화, 청소년 및 지역사회개발부 (Ministry of Culture, Youth & Community Development)
179	영국 (United Kingdom)	13-19세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180	미국 (United States)	25세 이하	청소년프로그램 및 글로벌 청소년 문제 사무국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Office of Global Youth Issues)
181	우루과이 (Uruguay)	14-29세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IDES))

빈도	국가명	대상연령	부처명
182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4-30세	-
183	바누아투 (Vanuatu)	12-30세	청소년개발, 체육 및 교육부 (Ministry for Youth Development, Sports and Training)
184	베네수엘라 (Venezuela)	15-30세	청소년부(Ministry of Popular Power for Youth)
185	베트남 (Vietnam)	16-30세	가족부(Ministry of Home Affairs)
186	예멘 (Yemen)	15-24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87	잠비아 (Zambia)	18-25세	청소년 및 체육부(Ministry of Youth and Sports)
188	짐바브웨 (Zimbabwe)	15-35세	청소년, 내수 및 경제성장부(Ministry of Youth, Indigenisation & Economic Empowerment)

2. 일본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0) 요약¹¹⁾

아동·청년 비전 (子ども・若者ビジョン)

2010년 7월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본부

※ 「아동·청년 비전」은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 (2009년 법률 제71호) 제 8조 제 1항에 근거한 아동·청년 육성지원과 추진의 기본원칙으로써 작성되었다.

제1절 아동·청년의 성장을 응원하고 개개인을 포용하는 사회 지향

1. 아동·청년의 「현재」와 「미래」

아동·청년은 소중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나라 및 세계의 미래를 담당할 「미래의 어른」이기도 합니다. 현재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미지의 사항에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여 자신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드는 미래에 대한 준비기간인 것입니다.

11) 이 내용은 일본의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발간한 「아동·청년비전(子ども・若者ビジョン)」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임(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本部, 2010).

2. 상황인식

세계화의 진전은 세계와 우리나라(일본)와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들에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공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되는 정보화의 진전은 시야나 견식을 넓히고 새로운 지적, 문화적 가치창조의 무대를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피해나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어서, 정보 또는 정보기기를 적절하게 잘 다루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어 왔는데, 특히 비정규노동자의 증대는 청년이 장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큰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 아르바이트나 자발적 실업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상태이며, 경제적 격차의 확대와 세대를 걸친 고정화는 「아동의 빈곤」 문제로서도 부각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 중에는 돌아갈 집이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사회에서 받아들여줄만한 곳도 불충분한 와중에 거처를 찾아 헤매는 아동·청년도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에 있어서 양육력의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 전체에서 아동·청년을 지키고 키우는 기능을 완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어른들도 자각을 가지고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청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에 대한 투자」로 평가하여 시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 「아동·청년 비전」의 책정

「아동·청년 비전」은 아동·청년 육성지원추진법(2009년 법률 제71호)의 시행을 받아들여, 「청소년육성정책대강」(2008년 12월 결정)을 대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 비전의 책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 아동·청년을 육성(育成)의 대상으로서 파악하지 않고,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서 존중한다.
- 아동·청년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가가 포함된 지역의 네트워크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모든 아동·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응원함과 동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아동·청년이 놓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청년을 지지함과 동시에 장래에 보다 잘 살기 위한 성장을 하도록 서포트한다.
- 아동·청년을 둘러싼 어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어른들도 보다 좋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기를 추구한다.

아동·청년이 육성 지원에 관한 시책은 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을 비롯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관련 있는 국가·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전력으로 대처합니다.

제2절 기본적인 방침

1. 5가지 이념

(1) 아동·청년의 최선의 이익을 존중

일본국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아동·청년 개인으로서의 존엄을 중시하고, 발달단계에 따라 의견을 충분히 존중함과 동시에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아동·청년은 어른과 함께 사는 파트너

아동과 청년을 어른보다 한수 아래의 존재로만 보거나 반대로 아동·청년의 응석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청년과 어른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책임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자기를 확립하고 사회의 능동적인 형성자가 되기 위한 지원

아동·청년이 사회와의 관련성을 자각하면서 자존감과 자기긍정을 키우고, 자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적응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래 사회를 보다 좋게 변화시켜 나갈 힘을 익힐 수 있도록,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4) 아동·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사회 전체에서 중층적(中層的)으로 실시

아동·청년이 가진 능력이나 가능성, 또는 안고 있는 어려움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또 여러 분야에 걸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하나의 분야 안에서도 관민의 다양한 단체나 개인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바, 사회 전체에서 분야나 주체의 벽을 넘어서 서로 연계, 협력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놓인 상황, 발달단계, 성별 등에 따라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도 배려하여 아주 세심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연계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로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개개인을 포용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모든 아동·청년이 든든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5) 어른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재검토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어른이 아동·청년에 대해 가해자인 경우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싼 어른을 포함한 아동·청년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어른들 자신이 그 책임을 자각하고 아동·청년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를 개선하는 데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재검토해나가겠습니다.

2. 세 가지 중점 과제

(1) 아동·청년이 활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을 터득하기 위한 방안

아동·청년이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데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전한 가정의 환경을 확보하고 어른 사회의 바람직한 자세를 재검토하는 등 아동·청년을 둘러싼 상황을 개선함과 동시에, 풍부한 인간성을 육성하고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형성, 체력향상, 기초학력 보장 등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년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초 위에 다양한 체험과 타인과의 교류를 쌓아 나감으로써 자립적인 개인에게 필요한 지식, 능력, 사회성과 리더쉽 등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와 체험활동 등의 능동적인 활동에 충실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문화에 접하여 이해를 심화시키는 활동, 실무교육과 직업교육에 충실하도록 모색할 것입니다.

(2) 위기에 처한 아동·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년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자,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등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곤란한

사람, 장애, 학대를 비롯한 범죄피해, 정주외국인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각각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비행이나 범죄에 빠진 아동·청년에 대해서는 그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배려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동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3) 다양한 담당자의 지역적 육성

아동·청년 육성지원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모든 구성원이 각각의 역할을 해냄과 동시에, 상호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연계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공공(公共)」에 입각하여 가족과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민의 방안이 행정 분야마다 종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네트워크의 종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청년 스스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간인의 참여협력을 포함한 교육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열린」 학교 만들기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지방공공단체에서 마련돼 있는 「아동 옴부즈퍼슨(고충처리 담당원)」 등, 아동·청년에 관한 권리침해 등의 갖가지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면서 해결하는 제도를 보급할 것입니다.

제3절 아동·청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적 방향

다섯 가지 이념과 세 가지 중점 과제에 입각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1.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1) 아동·청년의 자기형성 지원

- ① 일상생활의 능력을 습득
 -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 체력의 향상
- ②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 집단놀이의 기회를 확보

- 독서활동의 추진
- 지역 등에서의 다양한 활동
- 평생학습의 대응
-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기회의 확보 등
- ③ 학력의 향상
 - 지식·기능과 사고력·판단력·표현력, 학습의욕 등의 「탄탄한 학력」의 확립
 - 기초학력의 보장 등
 - 고등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보증
 -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
- ④ 대학교육 등의 충실
 - 교육내용의 충실
- ⑤ 경제적 지원
 - 충실한 경제적 지원

(2) 아동·청년의 사회형성·사회참여 지원

- ① 사회형성의 참여 지원
 - 사회형성과 사회참여에 관한 교육[시티즌십 교육]을 추진
 - 아동·청년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의 확보
- ② 사회참여 촉진
 - 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 추진
 - 국제교류활동

(3) 아동·청년의 건강과 안정의 확보

- ① 건강의 확보·증진
 - 편안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의 확보, 소아 의료의 충실 등
 - 사춘기 특유의 과제에 대한 대응
 - 건강교육의 추진

② 상담체제의 충실

- 학교의 상담체제의 충실
- 지역의 상담, 의료기관의 대응

(4) 청년의 직업적 자립, 취업 등의 지원

① 취업능력 · 의욕의 습득

- 근로의식 · 직업관과 직업적 자립에 필요한 능력 형성
- 능력개발

② 취로 등의 지원에 충실

- 고교생 등의 취직 지원
- 대학생 등의 취직 지원
- 직업적 자립을 위한 지원
- 창업지원

2. 위기에 처한 아동 · 청년과 그 가족을 지원한다.

(1)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처

① 자발적 실업자, 은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아동 · 청년의 지원 등

-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 · 청년을 지역에서 지원하기 위한 방안
- 자발적 실업자 등 청년의 지원
-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 등교거부 아동 · 청년의 지원
- 마음의 문제에 대한 대응
- 고교 중도 퇴학자에 대한 지원

② 장애가 있는 아동 · 청년의 지원

- 장애가 있는 아동 · 청년의 지원
-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 청년의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등
- ③ 비행과 범죄에 빠진 아동·청년의 지원 등
 - 종합적 대처
 - 비행방지, 상담활동 등
 - 약물남용 방지
 - 피해자의 배려
 - 소년감별소 등
 - 소년원·아동자립지원시설 등
 - 갱생보호, 자립·재기 지원
 - 비행소년에 대한 취업 지원 등
 - 괴롭힘과 폭력의 대책
- ④ 아동의 빈곤 문제의 대응
 -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 세대를 넘는 연쇄 빈곤의 방지
 - 상황파악
- ⑤ 곤란에 처한 아동·청년의 거주지 마련
 - 비행소년의 재기 지원
 - 요보호아동의 거주지 마련
 - 그룹 홈 등의 거처 마련
- ⑥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청년의 지원
 -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충실한 교육 등
 - 정주외국인 청년의 취직 촉진 등
 - 성동일성장애자 등
 - 십대 부모에 대한 지원
 - 혼인 외의 출생자

(2) 아동·청년의 피해방지와 보호

- 아동학대 방지 대책
- 충실한 사회적 양호
- 아동·청년의 복지를 위해하는 범죄대책
- 범죄피해를 당한 아동·청년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대응
- 폭력피해, 자살 대책
-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3.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 전체가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

(1) 환경정비

- ① 가정 학교 및 지역 상호 관계의 재구축
 - i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가정을 여는」 체제
 - 가정교육 지원
 - 다양한 양육에 대한 지원
 - ii 외부의 힘도 활용한 「열린 학교」 만들기
 - 가정·지역과 일체된 학교의 활성화
 - 교육·상담체제와 충실한 기능
 - iii 방과 후의 거처나 다양한 활동의 장 만들기
 - 아동의 방과 후 계획 추진
 - 중고생의 방과 후 거처 마련
 - 체험·교류 활동 등의 장 만들기
 - 도서관 등의 확충
 - iv 아동·청년이 범죄 등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
 - 아동·청년이 범죄 등의 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마을 만들기
 - 안심하고 외출하고 바깥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의 정비

- ② 다양한 주체에 의한 대응 추진
 - i 상담체제의 충실
 - 아동·청년 종합 상담 센터
 - 옴부즈퍼슨 등 아동의 상담체제
 - ii 민간단체 등의 대응 추진
 - 국민운동 등의 방안 추진
 - 「새로운 공공(公共)」에 의한 아동·청년을 지지하는 활동 등의 지원
- ③ 관계기관의 기능강화, 다양한 지역적 담당자의 육성
 - i 전문직의 양성·확보
 - 의료·보건관계 전문직
 - 아동복지와 관련된 전문직
 - 사춘기의 심리와 관련된 전문직
 - 소년선도와 비행청소년의 처우에 관한 전문직
 - ii 다양한 지역적 담당자의 육성
 - 청소년 리더 등의 육성
 - 민간협력자의 확보
 - 같은 세대 또는 연령이 비슷한 세대에 의한 상담·지원
 - 아동·청년 자신의 네트워크
- ④ 양육 지원 등의 충실
 - 아동과 양육을 응원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 ⑤ 아동·청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등에 대한 대응
 -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의 정확한 시행 등
 - 휴대전화 등을 둘러싼 문제의 방안
 - 성 풍속 관련 특수영업의 제도 등
 - 주류, 담배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 금지

(2) 바람직한 어른 사회의 재검토

- 바람직한 고용·노동의 재검토

- 영유아와 만나는 활동의 추진
- 학대를 가한 보호자에 대한 대처 등
- 소년원재원자의 보호자 등에 대한 지도·조언 등
- 가족과 지역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

제4절 미래의 시책에 관한 추진체제 등

1. 아동·청년에 관한 실태 등의 파악, 지식의 집적과 공유

- 조사연구
- 조사 데이터 등의 공유·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2. 홍보개발 등

- 홍보개발·정보제공 등

3. 국제적인 연계와 협력

- 국제기관의 방안에 대한 협력
- 정보의 수집과 발신

4. 시책의 추진 등

- 정부 관계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
- 지역의 방안 추진
- 관계시책을 실시한 후의 상황 점검과 평가
- 아동·청년의 의견청취 등
- 비전의 재검토

〈부록〉 아동 및 청년에 관한 정의

아동: 영유아기, 학동기 및 사춘기인 자

청년: 사춘기, 청년기인 자. 시책에 따라서 40세 미만까지의 포스트 청년기인 자도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영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인 자. 즉 영유아기에서 포스트 청년기까지를 광범위하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대신 「아동·청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 영유아기는 의무교육 연령까지 이르는 자

※ 학동기는 초등학생인 자

※ 사춘기는 중학생부터 대략 18세까지인 자

※ 사춘기인 자는 아동에서 청년으로의 이행기로서 시책에 의해 아동, 청년 각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년기는 대략 18세부터 30세 미만까지인 자

※ 포스트 청년기는 청년기를 넘어 대학 등에서 사회의 각 분야를 지지하고 발전시켜가는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자나, 원활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을 가진 40세 미만인 자

※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해 용어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언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좌동훈·강경균·김정숙·황세영·문호영·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유성렬·임성택·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유홍식·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이유진·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김경준·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이경상·김정숙·장근영
- 15-R44 청소년·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김형주·박성재·민주홍·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이종원·유성렬·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정은주·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Abstract

This research deduced policy issues based on the analysis on youth policies enforced in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Japan, China and Russia while carrying forward research cooperation and exchanges with researchers in relevant countries through Northeast Asia Youth Policy Forum.

It was found that the 3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e the late 20s in their youth policy target and suggest support policy for youth independence such as youth employment or venturing as their important policy subjects. Regarding this, the youth policy status of the whole world was checked, and found that 90 countries are enforcing policies including 30s as their target. Besides, the number of countries which specified youth in the name of their central departments are 98(72.6%) out of total 135.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n the general plans on youth policy showed that Japan, China and Russia have selected and are enforcing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and support policy for youth independence as their critically important policy subject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need of revising the age regulations to include late 20s and connections and cooperations between the researchers in northeast Asian region as policy issues. In the long term, this research provided opinions on policy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reorganization plan to encompass children, youth and young adults.

Key Words: northeast Asian countries, Northeast Asia Youth Policy Forum, youth policy, youth transition to adulthood, age regulations

연구보고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42)254-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92-2 93330